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051000-000112-09

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-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-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

대한민국정부
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



대한민국정부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목 록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 3

- / 3
- / 4
- / 5
- / 15
- / 17
- / 18
-

2. 금융 6

- / 6
- / 7
- 「 」 / 8
- / 9
- / 19 (ATM)
- / 20
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 10

- / 10
- / 11
- / 12
- / 13
- / 14

4. 환경·국토 21

- / 21
- 「 」 / 22
- / 23
- / 24
- / 25
- / 26
- / 27
- “ ” / 28

○		○	‘ ,
/ 29		/ 49	
○		○	
/ 30		/ 50	
○		○	
/ 32		/ 51	
○	/ 33	○	
○	.		/ 52
/ 34		○	.
○			/ 53
/ 35		○	
○	/ 36	(TPMS)	/ 54
○			/ 55
(http://nhf.mltm.go.kr)	/ 37	○	
○	,	○	/ 56
/ 38		○	
○		/ 57	
/ 39		○	20
○	/ 40	(1)	/ 58
○	/ 41	○	/ 59
○	.	○	
PDF		○	/ 60
/ 42		○	
○	/ 43	/ 62	
○	/ 44	○	/ 63
○		○	.
/ 45		○	/ 64
○		/ 65	
/ 46		○	,
○		/ 66	
/ 47		○	
○	/ 48	/ 67	

○		○	
	/ 68		/ 90
○		○	/ 91
○		○	
	/ 70		/ 92
○		○	
○	/ 71		/ 93
	/ 72	○	
○			/ 94
/ 73		○	
○			/ 95
/ 74		○	
			/ 97
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	75	○	
○			/ 99
	/ 75	○	
			/ 100
○	/ 76	○	/ 101
○		○	/ 102
	/ 77		
○ PC	/ 78	6. 고용노동	103
○		○	
/ 79			/ 103
○			/ 104
	/ 80	○ ()	
○	/ 81		/ 105
○	/ 82	○	
○	/ 83		/ 106
○	/ 84	○	
○	/ 86		/ 107
○ 3~5 全		○	
/ 87			/ 109
○		○ ()	
	/ 88		/ 110

○	/ 111	○	/ 133
○		○	/ 134
	/ 112	○	
○	/ 113		/ 135
○ 4		○	/ 136
	/ 114	○ A	/ 137
○	/ 115	○	
○			/ 138
	/ 116	○	
○	/ 117		/ 139
○	/ 118	○	
○	/ 119		/ 140
○		○	
	/ 120		/ 141
		○	
			/ 142
		○	
			/ 143
		○	/ 144
		○ 「	
		」	/ 145
		○	
			/ 146
		○	/ 147
		○	
			/ 148
		○ ()	
			/ 149
		○	
			/ 150
		○	
			/ 151
		○	
			/ 152
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121

○	/ 121		
○			
	/ 122		
○	/ 123		

8. 보건·국방 124

○	/ 124		
○	/ 125		
○			
	/ 126		
○	/ 127		
○	/ 128		
○			
	/ 129		
○	/ 130		
○	/ 131		
○	/ 132		

○ ‘ , ’	○
/ 153	/ 171
○	
/ 154	10. 농식품·산림 172
○ 「 」 3	○
2 / 155	/ 172
○ ,	○ · / 173
/ 156	○ ‘ ,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 157	/ 174
○	○
/ 157	/ 175
○ ·	○ / 177
/ 158	○
○ 5 3-4	/ 178
(‘13.3) / 159	○
○ · ·	/ 179
/ 160	○
○ / 161	/ 180
○	○
○ (‘13~’16) ,	/ 181
/ 162	○
○	/ 182
/ 163	○ / 183
○	○ / 184
/ 164	○
○	/ 185
/ 166	○
○ TV / 167	/ 186
○ ·	○ / 187
‘107 , / 168	○
○ 700MHz	· / 188
/ 169	○
○ / 170	/ 189

○ 5 .	○
/ 190	/ 195
○	○ FTA
/ 191	/ 196
○ .	○ . .
/ 192	/ 197
○ .	○ (, ,
/ 193	) / 198
○ / 194	○
	(3 → 2km) / 199

◇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◇

○ 기획재정부 203

○ 교육과학기술부 203

1. / 203
2. · / 203
3. 5 3-4 / 204
4. / 204
5. / 204
6. , / 205

○ 법무부 206

1. / 206
2. / 206
3. / 206
4. / 207

○ 국방부 207

1. / 207
2. / 207
3. / 207
4. / 208
5. / 208
6. / 208
7. / 208
8. / 209
9. / 209
10. / 209
11. / 209

12. / 210

13. A / 210

14. / 210

○ 행정안전부 210

1. / 210
2. / 211

○ 문화체육관광부 211

1. / 211
2. / 211
3. / 211

○ 농림수산식품부 213

1. / 213
2. · / 213
3. / 213
4. / 214
5. / 214
6. / 214
7. / 215
8. / 215
9. / 215

10.	/ 216	4.	/ 221
11.	/ 216	5.	
12.	,		/ 221
	/ 216		
13.	,	○ 환경부	221
	/ 216	1.	
14.			/ 221
	/ 216	2. 「	
15.	/ 217		」 / 221
16.	/ 217	3.	/ 222
17.		4	/ 222
	/ 217	5.	/ 222
18. 5 , ·		6.	/ 222
	/ 217	7.	/ 223
19.		○ 보건복지부	223
	/ 218	1.	
20.			/ 223
	/ 218	2.	/ 224
21. ·		3.	
	/ 218		/ 224
22.	/ 218	4. PC	/ 224
23.		5.	
	/ 219		/ 225
24. FTA		6.	/ 225
	/ 219	7.	
○ 지식경제부	219		/ 225
1.		8.	/ 227
	/ 219	9.	
2.			/ 227
	/ 220	10.	/ 227
3.		11.	/ 227
	/ 221		

12.	3~5	全	20.		/ 235
		/ 228	21.		/ 235
13.			22.		/ 235
		/ 228	23.		/ 236
○ 국토해양부	229		24.		/ 236
1.		/ 229	25.	·	·
2.		/ 230	26.		/ 236
3.		/ 230	27.		/ 236
4.		/ 230	28.		/ 237
5.		/ 231	29.		/ 237
6.	·	/ 231	30.		/ 237
7.		/ 231	31.		/ 237
8.		/ 231	32.		/ 238
9.		/ 232	33.		/ 239
10.	,	/ 232	34.		/ 239
11.		/ 232	35.	·	/ 239
12.		/ 232	36.		/ 239
13.		/ 232	37.	,	/ 240
14.	·	PDF	38.		/ 240
		/ 233	39.	·	/ 240
15.		/ 233	40.		/ 241
16.		/ 234	41.		/ 241
17.		/ 234			
18.		/ 235			
19.		/ 235			

- 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42. | / 241 | 10. | / 247 |
| 43. | | 11. | / 247 |
| | / 241 | 12. | |
| 44. | / 242 | | / 247 |
| 45. | | 13. | / 247 |
| | / 242 | 14. | 4 |

○ 여성가족부 243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43 |
| 2. | . |
| | / 243 |
| 3. | / 243 |
| 4. | |
| | / 243 |
| 5. | |
| | / 243 |
| 6. | . |
| | / 244 |

○ 고용노동부 245

- | | |
|--------|-------|
| 1. | |
| | / 245 |
| 2. | / 245 |
| 3. () | |
| | / 245 |
| 4. | |
| | / 245 |
| 5. | |
| | / 246 |
| 6. | / 246 |
| 7. | |
| | / 246 |
| 8. | |
| | / 246 |
| 9. | / 247 |

-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/ 247 |
| 15. | / 248 |
| 16. | / 248 |
| 17. | / 248 |
| 18. | |
| | / 248 |
| 19. | . |
| | / 249 |
| 20. | |
| | ('12.11.22. , 12 |
| | ,) / 249 |
| 21. | |
| | / 249 |

○ 방송통신위원회 249

- | | | |
|----|--------|-------|
| 1. | TV | / 249 |
| 2. | | |
| | / 250 | |
| 3. | 700MHz | |
| | / 250 | |
| 4. | | / 250 |
| 5. | | / 251 |

○ 국가보훈처 251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51 |
|----|-------|

○ 금융위원회 251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51 |
|----|-------|

2.		/ 252	○ 방위사업청	255
3. 「	」	/ 252	1.	/ 255
4.		/ 252	2.	/ 255
○ 관세청		252	3.	/ 256
1.		/ 252	4.	.
			/ 256	
○ 병무청		253	5.	/ 256
1.		/ 253	6.	/ 256
2.		/ 253	7. 「	/ 257
3.		/ 253	8.	/ 258
4.		/ 253	○ 경찰청	258
5.		/ 253	1.	/ 258
6.		/ 254	○ 소방방재청	259
7. ‘ , ’		/ 254	1.	/ 259
8.		/ 254	2.	/ 259
9. 「	」	/ 254	○ 산림청	260
10.		/ 254	1.	/ 260
11.		/ 255	2.	/ 260
12.		/ 255	3.	/ 260
			4.	/ 261
			○ 중소기업청	261
			1.	/ 261

2. / 261

○ 특허청 262

1. / 262

2. (ATM) / 262

3. / 262
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262

1. / 262

◇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◇

'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 / 7
- / 12
- / 13
- / 14
- / 32
- (http://nhf.mltm.go.kr) / 37
- / 41
- / 52
- / 60
- / 91
- / 106
- / 119
- / 120
- / 138
- / 146
- / 147
- / 148

- / 151
- / 152
- ‘ ’ / 153
- / 154
- / 191
- (3 → 2km) / 199

'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
1월

- / 3
- / 4
- / 6
- / 9
- / 17
- / 18
- (ATM) / 19
- / 20
- / 21

○		○	
	/ 27		/ 70
○	·	○	
“	” / 28		/ 74
○		○	
	/ 33		/ 79
○	·	○	
	/ 34		/ 80
○		○	
	/ 35		/ 81
○		○	/ 82
	/ 36	○	/ 83
○	,	○	/ 86
○		○	
	/ 43		/ 88
○		○	
	/ 44		/ 90
○		○	·
	/ 45		/ 92
○		○	
	/ 47		/ 93
○		○	
	/ 48		/ 103
○		○	/ 104
	/ 50	○ ()	
○			/ 105
(TPMS)	/ 54	○	
○			/ 107
	/ 56	○	
○			/ 109
	/ 57	○	()
○			/ 110
	/ 65	○	
○	,		/ 111
	/ 66	○	
○			/ 112
	/ 67		

○	/ 113	○ ‘	,
○	4		/ 174
	/ 114	○	
○	/ 115		/ 178
○	/ 117	○	
○	.		/ 179
○	/ 118	○	
○	/ 124		/ 180
○	/ 125	○	
○	/ 128		/ 182
○		○	/ 183
/ 129		○	
○	/ 130		/ 185
○	/ 131	○	
○	/ 133		/ 186
○	/ 134	○	
○			/ 189
/ 135		○	5
○			.
	/ 140	○	/ 190
○		○	
	/ 143		/ 195
○		○	FTA
	/ 150		/ 196
○	.		
○	/ 158	2월	
○		○	
/ 163			/ 23
○	TV	○	
○	/ 167		/ 24
○	.	○	/ 25
‘107	,	○	/ 71
/ 168		○	
○	/ 170	○	
○			/ 121
/ 172		○	
○	.		/ 127
/ 173			

○	○ 5	3-4
/ 139	('13.3) / 159	
○	○	
/ 141	/ 162	
○	/ 142	
/ 144	4월	
○ 「	○	/ 84
」 3	○ A	/ 137
2 / 155	○	
○ . .		/ 188
/ 160	○ .	/ 193
○	/ 164	
○	/ 166	
○	/ 171	
○	○ . .	/ 184
('13~'16)	/ 197	
, / 181	5월	
3월	○ 「	/ 8
○	○ .	PDF
/ 10	/ 42	
○	○ 20	
/ 72	(1)	/ 58
/ 76	○	/ 59
○ 3~5 全	○	/ 62
/ 87	○ PC	/ 78
○ .	○	/ 94
/ 116	○	/ 95
/ 123		
○ 「		
」 / 145		

○	·	·
	/ 97	
○		
	/ 99	
○	·	
	/ 100	
○	·	
	/ 126	
○		
	/ 175	
○		/ 187
○	·	
	/ 192	
○		/ 194

7월

○		
	/ 51	
○		
	/ 63	
○	·	/ 64
○		
	/ 73	
○		
	/ 77	
○		/ 100
○		/ 102
○		/ 136

8월

○		
	/ 29	
○		/ 55

9월

○	「	
	」	/ 22
○		/ 30
○	‘	’
	/ 49	
○	·	·
	/ 53	

10월

○		
	/ 75	
○	700MHz	
	/ 169	

12월

○		
	/ 11	

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
'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○		
	/ 5	
○		/ 15
○		/ 26
○		/ 39
○		/ 40
○		/ 46

○

· / 68

○

/ 69

○

/ 122

○

/ 132

○

()

/ 149

○

,

/ 156

○

/ 157

○

/ 161

○

/ 177

○

(,

,

)

/ 198

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	3
2. 금 융	6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	10
4. 환경·국토	21
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	75
6. 고용노동	103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	121
8. 보훈·국방	124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	157
10. 농식품·산림	172



1. 세 제

공정과세 구현을 위한
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16)



- 20% 10% , 20%
- 40% .
- (10%)
- ,
- ,
-

<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>

- ▶ :
- ▶
 - ① (20%), (10%), (40%)
 - ② (10%)
 - ③
- ▶ : 2013.1. (,)

**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
지방세 감면기한 연장**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26)



12

13.1.1

- (50%
→ 75%) , (50%)

*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(32개, '12.5월 기준)에 대해서만
75% 적용, 기타(50개) 50% 적용 중

- (18 3)
(140
2012 2015 3

- 2012
2015 3

- 13

※ : 2013.1.1(, '12.12.28)

보세사 자격증
취득요건중 기본교육
사전이수 의무 폐지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
(☎ 042-481-7906)



•

3

• 2013

3

<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,)

2. 금융

**실손의료보험 표준형
단독상품 출시**

금융위원회 보험과
(☎ 02-2156-9831)

☐

*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: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를 보장 (기존 90%, 100%)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• 13.1

• 10%

• 20%

• 3

• 1

• 15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종합
개선대책
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<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>

※ 단,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3.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
(☎ 02-2156-9856)

- .
- .
 - (1~6) (20 , '13.7 19) . ()
 - , (7) , (i) , (-) 50
 - (ii) (.) 30 .
- ()
- ①
- ② 6 ,
- .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

<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>

- ▶ :
- ▶
 - ① (1~6)
 - ②
- ▶ : 2012.10.15. ()

「대부중개수수료
상한제」 시행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
(☎ 02-2156-9475)



5%

•

,

•

「

」

.

-

,

(

)

'13.

※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다만, 여신금융 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)

<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>

▶

:

▶

①

5%

▶

: 2013.6. 12

**전자단기사채등의
발행 및 유통에
관한 법률 시행**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(☎ 02-2156-9874)

- 「
15
·
(
,
)
「
」
·
(CP)
,
,
·
① CP
- CP
·
- CP
② CP
- 1
-
③
-
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

최근 산업구조의
변화를 반영한 산업
단지제도 개선
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
(☎ 02-2110-5302)

- . ,
- .
- 11
- , '12 12
- , '13 3
- 2

<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>

▶ : ,

▶

① (2012.12)

② (2013.3)

**유전자변형미생물
및 생산공정이용시설
안전관리 제도화**

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
(☎ 02-2110-5661)



- 「
(LMO)」

* 국내 C기업에서 “당”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개발(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), 식약청에 위해 **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** 완료하고, 생산승인한 바 있음('11.6월)

- '13 12 LMO 22 3 22 4

* LMO법 제22조의3(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: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, LMO법 제22조의4(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)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



(7 2),



(22),



.(26 2)

<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>

▶ :



①

②

()

▶ : 2013.12.

**강원랜드의 폐광지역
개발자금 납부비율
상향조정**
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
(☎ 02-2110-5495)

■ ()
100 20 100
25
.
• 100 20
100 25 .

<2013년도 폐광지역개발자금 납부비율>

- ▶ :
- ▶
 - ① (20%→ 25%)
- ▶ : 2012.11

**외국 리콜제품에 대한
사업자보고 의무화**

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
(☎ 02-509-7238)



•

*

* 리콜이행 실적 : 미국 ('08) 564건, ('09) 466건, ('10) 402건
일본 ('08) 106건, ('09) 94건, ('10) 103건

•

<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2.8.24.

**우정서비스의 업무
전문성 제고를 위해
업무위탁 확대**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
(☎ 02-2195-1115)



• “ ”

*

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
관리단

•

**** 업무위탁 확대 내용**

-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
등 다수
- 세부내용 : 『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』 제14조(업무의
위탁) 참고

☞ (관련법령) www.law.go.kr에서 “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” 검색
(제14조)

<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>

▶ :

▶

① * (**)

*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
지원 등

*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▶ : 2012.11.6.

**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
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**

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
(☎ 042-481-4453)



75%

- ‘13 1

*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기존 지역사업을 개편)

**산학연 도약기술개발 :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·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(기존 전국, 국제, 중점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합 개편)



, ‘13 1



• (3) , , .

• , 1 ‘13
1 ~ 9 .
.

**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
소규모 협동조합에
협업사업 지원**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
(☎ 042-481-4491)



· () , 2013 1

·

-

,

.

<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>

- ▶ :
- ▶
- ① : , , , , ,
- ② : , , , , ,
10~20 ()
- ③ : (: 1)
(80%, 20%)
- ④ : → . → →
→ → →
- ▶ : 2013.1.

※

중견기업 특허수수료
감면제도 도입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-
- 「2013.1.1.부터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.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0% 감면된다. ※ 중견기업: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
 - 2013.1.1.부터,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.

<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▶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.

▶ ① 2013.1.1.부터,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. 30% 감면된다. ② 2013.1.1.부터,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.

▶ : 2013.1.1.

**특허수수료 자동납부
신청 금융기관 확대
및 자동화기기(ATM)
납부 특허수수료 확대**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

- ‘ () ‘
- ,
- , , ,

※ (A type)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, 연차등록료,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
(B type)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

- ’13.1.1.



(ATM)

- (ATM)
- ’13.1.1.
- (ATM)

**<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
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>**

- ▶ :
- ▶
 - ①
 - ② (ATM)
- ▶ : 2013.1.1.

**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
보호를 위한 특허청
인증체계 개선**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8238)



- ,
- ,
- , 2013 1 (,)
- *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
- , 2013
- , , ()

<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>

- ▶ :
- ▶
 - ① ('13)
 - ②
- ▶ : 2013.1.1.

4. 환경 · 국토

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
(☎ 02-2110-6822)



- 1,4-
3 ,
(TOC)

<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3 (17 → 20)
- 1,4- ,
 - ② (TOC)
- .
- ▶ : 2013.1.

「어린이용품 환경
유해인자 사용제한
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(☎ 02-2110-6960)

■ 2013 9 27 「

」

.

- 4 (DNOP, DINP, TBT,)

.(12.9.27)

※ DNOP(Di-n-Octylphthalate, 다이-n-옥틸 프탈레이트), DINP(Di-isononyl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, TBT(Tributyltin compounds, 트라이뷰틸 주석), 노닐페놀(Nonylphenol)

- DNOP, DINP

*

* 전이량 :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(빠는 행위), 피부,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

- TBT, 「

*

* 취급제한물질 :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)

•

•

<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>

▶ :

▶

① 4 (DNOP, DINP, TBT,)

- DNOP, DINP : (,) , TBT, :

▶ : 2013.9.27.

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
위한 자동차 배출가스
원격측정 시행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59)



- ()
- (,)

- 2013 2

2014

- , (. .)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
시행규칙 입법예고

<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>

- ▶ : .
- ▶
- ① ()
- : , ()
- : , () +
- ()
- ▶ : 2013.2.2.

**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
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
정비사업으로 통합**
환경부 교통환경과
☎ 02-2110-6859)

- **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**
• **배출가스 전문정비업** : 2013.2.2.부터 시행
• **확인검사대행자** : 2013.2.2.부터 시행
• **통합** : 2013.2.2.부터 시행
- **배출가스 전문정비업** : 2013.2.2.부터 시행
• **확인검사대행자** : 2013.2.2.부터 시행
• **통합** : 2013.2.2.부터 시행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
시행규칙 입법예고

<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>	
▶	:
▶	
①	2
▶	: 2013.2.2.

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09)



•

30%

2013 2

※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%, PM 43%가 비도로이동오염원
(건설기계, 농업기계 등)에서 배출('09년 CAPSS 자료)

- 2013 , 2 Tier-3
, 2015 Tier-4

•

2013 2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
단계적 규제 시행

<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>

▶ :

▶

① , Tier-3 ()

② . (:

)

▶ : 2013.2.

**미세먼지 예보를 통한
국민 건강 보호**

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
(☎ 02-2110-6778)

■ 2013

• 8월 1일부터, 2013

- 2013년 12월 31일까지, 2014

• (PM10) (PM2.5)

※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 발표) :

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·재산이나 동식물의
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
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
<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>

- ▶ : ①
- ▶ ② , (,)
- ▶ : 2013 ()
- ▶ : 7 2(.)

**자원순화사회 구축을
위한 음폐수 해양배출
금지**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
(☎ 02-2110-6943)

■ 2013 1 1
()

• 2006

• 2011 12

, 1

2013 1

■

<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>

▶ : ,

▶
① ()

▶ : 2013.1.1.

감정평가의 투명성·
객관성 제고를 위한
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
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
(☎044-201-3424)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하며,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·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–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·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’13.1.1. (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

<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>

▶ : ,

▶

① ()

② ()

()*

③ ()

▶ : 2013.1.1.

* 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('13년초 시행예정)

**부동산종합공부 열람
및 발급 서비스 전국
시행**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
(☎ 044-201-3480)

2013

233

• ' ,

「 」

• , , , , 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<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>

▶ :

▶

- ①
- ②
- ③

► : 2013.8.()

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**국민이 참여하는 지적
재조사사업 공개
시스템 도입**
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
(☎ 044-201-4651)



, 2013

(PPLIS)

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

<PPLIS 운영계획 모델>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<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
- ▶ : 2013.9.()

**국민주택기금 대출
및 조성금리 인하**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■ 0.5%p ,
0.5%p ' 12.12.21 .
• .
• (4.0%),
(4.2%), . (5.2%)
0.5%p * ,

구 분		변경전	변경후	비 고
		4.0%	3.7%	< > - (1.0→0.5%), . (0.5→0.2%) ()
		5.2%	4.3%	
		4.2%	3.8%	
		5.0 ~ 6.0%	3.8 ~ 4.0%	4.8%(60㎡)
		3.0 ~ 4.0%	2.7 ~ 3.7%	2% ('13)
		3.0%	2.7%	-

• (' ,)
0.5%p .

구 분	가입기간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
	2.5%	3.5%	4.5%
	2.0%	3.0%	4.0%

*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개정(12.21) *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>

▶ :

▶

① . (4.0%), (4.2%), . (5.2%)
0.5%p

② () 0.5%p

▶ : 2012.12.21.

**국민주택기금 대출
소득요건 조정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

2013 1

〈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〉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3 * 3 5	() 4 * 4 5
	3 * 4	() 4 * 5
	5	() 5 5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>

- ▶ :
- ▶
- ①
- ▶ : 2013.1.2

**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
가점제 무주택 인정
기준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■ 2013 1

- *
- **

* 가점항목(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17점)

** 무주택 인정기준 : 전용60㎡이하 +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+ 10년이상 보유

- ‘7’
- , ‘10’

■ 2007

-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>

- ▶ :
- ▶ ①
- () 5 →7 , () 10
→
- () 60㎡ →
- ▶ : 2013.1. (,)

**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
대한 제제요건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■ 2013 1

- *
- **

* 착오기재 사례: 청약순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, 재당첨제한 등

■ ,

* 당첨은 취소하되, 당첨사실을 삭제하고,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첨일로부터 1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제요건 완화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 .
- ▶ : 2013.1. (,)

외국인 주택단지에
입주할 수 있는
외국인 범위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>

- ▶ : .
- ▶
- ①
- ,
- ▶ : 2013.1.(,)

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
(<http://nhf.mltm.go.kr>)
서비스 개시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(<http://nhf.mltm.go.kr>)」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- ▶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▶ ①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▶ : 2012.12. (<http://nhf.mltm.go.kr>)

**아파트 관리, 입주민
자율 크게 확대**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9)

- **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**
• **500** ()
- ,
- 2 , 4
2 , 4 1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- ▶ : ,
- ▶
 - ① 500 ()
 - ② (, 2)
- ▶ : 2013.1.(,)

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

•

,

- ,

() ,

,

* 예 : 주민운동시설(실외)은 인근 동(棟)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,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

-

,

.

-

()
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<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>

▶ :

▶

① ,

▶ : 2013 (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**디자인을 제약하는
기준 정비**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

•

,

10

-

,

, 1

(

,

)

•

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
기준 전면개편

<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>

▶

:

▶

①

▶

: 2013

(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

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
(☎ 044-201-3392, 3386)

- ()
- 2006 9 25 ('09.7.1)
1
- 3
- ,
- 2014 12 31
- ()
- (, 4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

<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>

- ▶ :
- ,
- ,
- ▶
- ① 2014 12 31
- (() 4)
- ▶ : 2012.12.18.

지도·영상이 중첩된
PDF 방식의 지도
제작 및 배포

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
(☎ 031-210-2720)

- PC (PDF) .
- (CAD) ,
-
- ,
- /
- 2012 PDF (1/5,000) , 2013
- (S/W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형지도” 만든다.

<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>

- ▶ :
- ▶
- ① PDF , 2013 (1/5,000)
- ② (S/W)
- ▶ : 2013.6.

**감리전문회사의 입찰
부담 완화 및 선정
기준의 공정성 제고**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

- , (SOQ·TP)
- , (TP)
- , (SOQ)
- (10) 20
- ,
- , PQ
- (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
<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>

- ▶ : PQ ,
- ▶
 - ① ,
 - ② PQ
 - (2 →4)
- ▶ : 2013.1.(), 2013.4.(PQ)

■

**감리원 복지향상 및
합리적인 건설공사
감리대가기준 정립**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☎ 044-201-3581)

22)

(1

70%

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
<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1.

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77)



2013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
<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>

▶ :

▶

①

②

③

▶ : 2013.1.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89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/국토해양뉴스/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

► : 2013

**기업도시 개발이익
감소시 재투자비용
사후조정 기준 개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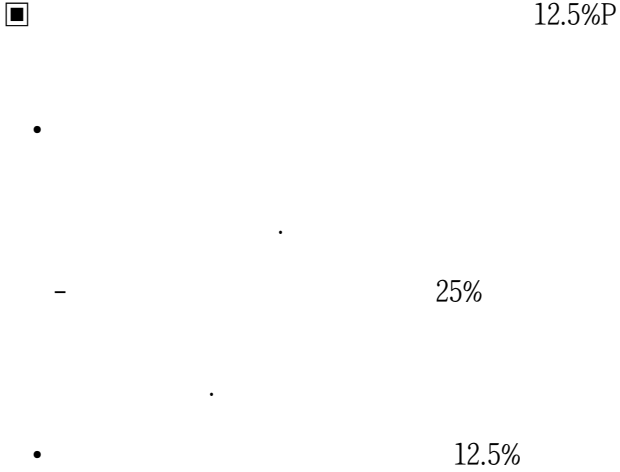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

☞ 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<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>	
▶ :	20%
▶	
①	20%
5%	
▶ : 2013.1.1.	

**기업도시 개발이익
재투자율 하향 조정**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

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<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>	
▶	:
▶	
①	12.5%
▶	: 2013.1.1.

**새만금사업을 총괄할
'새만금개발청' 신설**

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
(☎ 044-201-3696)



, .

* 새만금사업은 '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에 따라 30%를 농지로, 70%를 산업·관광·과학연구·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

- 6 (.)



『 』 2013 9 ‘ ,

• 6

• . . . ,

- ,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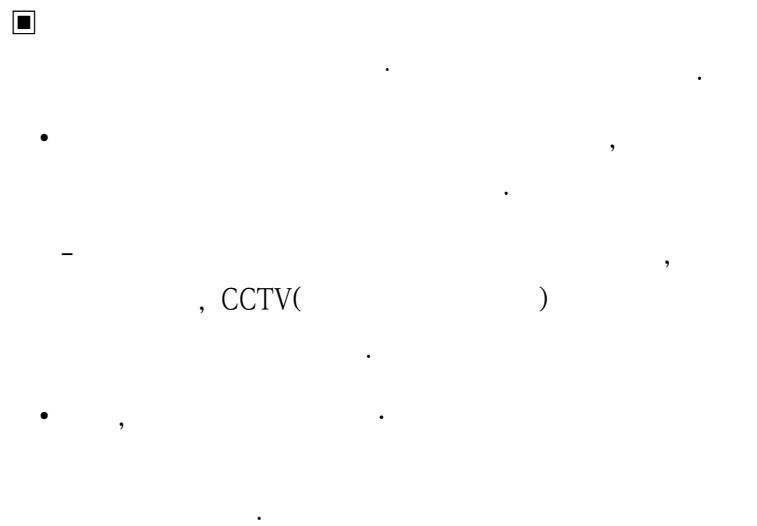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<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>

- ▶ : , , 『 』 172 ('12.11.22)
- ▶ ① , ()
- ②
- ▶ 시행일 : 2013.9.11.

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>

▶ :

▶

① ,

② .

▶ : 2013.1

**민간자본을 이용한
도시공원조성 활성화**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■ 10 m²

• (, 80%)

•

※ (민간공원제도) 10만m²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%이상을 기부
체납하는 경우 20%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(도시공원법 제21조의2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>

▶ : 10 m²

▶

•

☞ (현행)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 → (개정) 기존 요건에
'공원조성비 4/5 예치' 요건 추가

▶ : 2013.7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3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<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>

- ▶ :
▶
①
* 고지의무자 : 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
② 100
▶ : 2012.12.18.

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
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
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
통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4)



·
()

,

·

·

, ,

,

- 2013 9

, 6 ()

·

·

·

,

·

·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<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>

▶ :

▶

①

·

*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▶ : 2013.9.1.

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
경고장치(TPMS) 설치
의무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- , (TPMS)
- (TPMS)
- , 2013
- 3.5
- (TPMS)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>	
▶ :	
▶	
①	3.5 , ,
▶ :	2013.1.

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

•

2

,

4.5

3.5

,

•

.

-

4.5

→

(

'13.8.16)

* 최고속도제한장치 : 승합차(110km/h), 화물자동차(90km/h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>

▶

:

▶

①

▶

: 2013.8.16.

**보행자 보호를 위한
자동차 안전기준 강화**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■ () •	• 40% ,
, 2013 1 .	. • , , 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> ▶ : ▶ ① ▶ : 2013.1.1.
--

**철도운전면허시험
응시수수료 감면제도
도입**

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
(☎ 044-201-4602)



•

, 2013 1

「

」

「

」

50%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

<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▶ :

▶

①

-

50%

▶ : 2013.1.1

항만재개발 사업시행
자에게 20년(1회 연장)
까지 국유지 임대
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
(☎ 044-201-4177)

■ 20 (1)

•

(5)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<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>

▶ :

▶

① 20 (1)

②

▶ : 2013.6.

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
(☎ 044-201-4145)



20

•

•

,

•

•

,

20

,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<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>

▶ :

▶

①

②

20

▶ : 2013.6.

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
기준 신고제도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
(☎ 044-201-4003)

■

국제물류주선업 :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“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
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”으로
정의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‘포워딩(forwarding)’ 업이라 부름

- 3
- 2 6
2013 6 30
- ,
(1) (200)
- 30 60 , .
15 30
- 6 1 ,
- , (Apostille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

<국제물류추진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>

▶ :

▶

① (3)

② (→)

③ (30 → 60)

④ , , , (15 → 30)

⑤ (6 → 1)

⑥

⑦ (Apostille)

▶ : 2012.12.3. ('12.12.3)

**물류단지 개발절차
명확화 및 규제완화
등 제도개선**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■ ‘13 . 「 .
」
「 」
.
「
」 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>

▶

①

②

③

④

⑤

▶

: 2013.6.

*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2.10)

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

‘13

(

)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• ,

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>

▶

•

()

-

,

▶

: 2013.7. (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과징금·벌금 병과
제도 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- •

()

,

• ‘13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>

▶

•

,

- 1

1

- 1

3

•

▶ : 2013.7.(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**물류창고업등록관리
대국민 민원 서비스
실시**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11)

■ 「
1

2013

• (234)

* '12.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(3,612건) : 수도권 1,570건, 지방 2,042건

•

'13 1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>

▶ :

▶

① (2012 11)

▶ : 2013.1.

*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('12.8.4.)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('12.11)하고,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'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

국도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18)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<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>

- ▶ :
▶
① ,
▶ : 2013.1.1.

**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
허가기준 변경 시행**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22)

■ 「(13.1.1)

• 20 , 10

“ ” ,

500

“ ”

,

-
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<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>

▶ :

▶

①

“ ” ,

“ ”

▶ : 2013.1.1.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

15m

* 1.2

*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

<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>

▶ :

▶

①

(A~D)

②

1.2

15m

► : 2013.1.()

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

• ,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<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>

▶ : ICAO

▶

①

▶ : 2013.1.()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0)

•

•

울산, 포항, 사천공항

•

•

2

9

9

,

2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

<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>

▶

:

▶

(15

)

▶

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5)



(’12.7.27)

•



* “공항운영증명”은 공항운영자가 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

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<공항운영자 신설>

▶ :

▶

① 「 , 「 」

②

▶ : 2013.2. ()

**여수세계박람회 사후
활용 참여기업에 대한
인센티브 제공**

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
(☎ 044-201-4377)



• 2012 9 5

- 2012 12

3 100%, 2 50%

- 2013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

<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>

▶ :

▶

① (, 3
100%, 2 50%)

②

▶

① : 2013.1.

② : 2013.3.

**시화호 특별관리해역
연안오염 총량관리
시행**

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
(☎ 044-201-4422)



- 2017 (COD) 3.8
→ 3.3mg/L, (TP) 0.074→0.065mg/L
COD 7,241.3kg/ , TP
193.00kg/
* '10년도 COD 배출량은 7,761.7kg/일, TP는 203.11kg/일이며, 총량관리
미시행시 '17년도 COD 배출량은 8,703.5kg/일, TP는 251.54kg/일임
- ,
COD 1,462.2kg/ , TP
58.54kg/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

<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>

- ▶ :
 - ▶
 - ① : , / '13.7.1~
'17.12.31
 - ② : (. . .)
482.94km2
 - ③ : (3.3mg/L), (0.065mg/L)
 - ④ : (7,241.3kg/), (193.00kg/)
 - ⑤ : (1,462.2kg/), (58.54kg/)
 - ▶ : 2013.7. ()
- ※ 2012년 12월까지 「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 수립 예정

육상 발생 폐기물 중
해양배출 허용 대상
폐기물 축소

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
(☎ 044-201-4427)



• 「 」 23

, ()

*

*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(음폐수), 분뇨, 분뇨오니, 폐수, 폐수오니, 수산
가공 잔재물, 원료용 동·식물 잔재물, 준설토사, CO2 스트림

•

,

*

,

**

,

* 배출해역은 한일, 한·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

** 런던협약/의정서에서는 음폐수, 분뇨,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
있지 않음

*** 런던협약/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
우리나라가 유일함

•

'13

,

* 가축분뇨, 하수오니 : '12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완료)

* 산업폐수, 폐수오니 : '14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예정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해양환경관리법

<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축소>

▶ :

▶

①

② '13

▶ : 2013.1.1
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

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(☎ 02-2023-7418, 8756)



- (), (TS-1) 13
5%

- , , ,
, 2013 10



- , 2012 75
2013 7 50%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- ▶ : 「 」
- ▶
 - ① () (50% → 5%)
 - ② (TS-1) (100% → 5%)
 - ③ (→)
 - ④ (→)

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

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
(☎ 043-719-7369)



65

- Hib(b)

2013 3

5

- , 65
2013 5
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(<http://nip.cdc.go.kr>)

<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>

▶ : 65



- ① Hib(b)
(→ 5)

※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
무료접종 가능(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)

- ② 65
(→)

▶ : 2013.3. (65 5)

**의료급여 희귀난치성
질환 추가 및 건강
생활유지비 추가 지원**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(☎ 02-2023-8257)



144 , 107 2013

•

5 ,

- 2013 3

19

•

5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촘촘한
의료안전망 구축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▶ :

▶

① (107 →144)

②

(5 /)

▶ : 2013.7 ()

**PC방에서 흡연 전면
금지**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(☎ 02-2023-7848)



- ▶ ‘13 6 PC .
- PC , 13 6 PC
- *
- *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‘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

<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>

- ▶ :
- ▶ ① , , PC
- ▶ : 2013 6 8

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

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
(☎ 02-2023-7785)



-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 (단,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)
- 100원 초과 1,0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 (단, 100원 초과 1,0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)
- 150㎡ 이하 (45인 이하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 (단, 150㎡ 이하 (45인 이하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)
- 150㎡ 초과 (45인 초과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 (단, 150㎡ 초과 (45인 초과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)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음식점 메뉴판,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

<음식점,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>

- ▶ :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 (단, 1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)
- ▶ ① 100원 초과 1,0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 (단, 100원 초과 1,000원 이하의 가격인 경우, 가격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.)
- ▶ ② 150㎡ 이하 (45인 이하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 (단, 150㎡ 이하 (45인 이하)의 음식점은 가격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.)
- ▶ : 2013. 1. 1 (단, 2013. 4. 30)

생활이 어려운
중증장애인에 대한
장애인연금 지원
확대 등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(02-2023-8672.8654 ☎)

- 2013 () 2012 55.1 (88.1) 58
(92.8) 3 .
•
2012 43 2013 45 .
■ , 2013 1

- 2 .

<

>

- ▶ :
▶
① : ' 12 55.1 (88.1)
→ ' 13 58 (92.8)
② : ' 12 43 →
' 13 45
③ : ' 12 2
* 기초 : (18~64세) 6만원→8만원 / (65세 이상) 15만원→17만원
* 차상위: 5만원→7만원
* 차상위 초과 : (18~64세) 0만원→2만원 / (65세 이상) 2만원→4만원
▶ : 2013 1 1

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204)



2

1
, 2013 2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
및 급여 확대

<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>

▶ : 2

▶
① (1 → 2)

- ②
- () : 35~86 → 361~886
 - () : 35~52 → 361~886
 - : 83~664 → 86~684

* 최종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·출산·입원 등 보호자의
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

③
- / : 8,300 /9,300 → 8,550 /10,260

④
- / : 4,000 / : 6,000 /

▶ : 2013.1. ()

**재외동포 및 외국인
장애인등록 시행**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(☎ 02-2023-8184)



- 32
- 2013 1 27

<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>

- ▶ :
 - *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 (인권위, '08.7.15)
 - * 외국인 지위·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(국무조정실, '07.12.5)
 - *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(법무부)
- ▶ :
 - ①
 - ②
 - 6
 - 31
 - 10 1
 - 2 3
- 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
- ▶ : 2013.1.27.

**장애아동 재활치료
서비스 확대**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667)

- 3 1
 - 2013 4 .
 - ‘ 100% ’
 - , 2013 150% 9
 - 100% 150%
 - 18

<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>

- ▶ :
- ▶
 - ① (100% → 150%)
 - ② (31→40)
- ▶ : 2013.1. (,)

▶ . (21 , 14)

- .

- .

(7)

· , , , ,
 , , , ,
 , , , ,
 , , ,

▶ : 2013.4.11.

**체외수정 시술비
지원 확대**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(☎ 02-2023-8483)

■ 2013년 4월 30일 기준, 3회까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
• 2013년 4월 30일 기준, 3회까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
180만원, 4월 100만원, 180만원
2013년 4월 180만원
- , 4월 300만원
3월 300만원

<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>

- ▶ :
① (4월 : 100만원 → 180만원)
*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
* 인공수정은 '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
- ▶ : 2013.1.

**만 3~5세 어린이
수 계층 누리과정
확대 적용**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
(☎ 02-2023-8926)



3~5

- 2012 3 '5 ' 2013 3
3~5
- 3-5 ' 3~5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

<만 3~5세 어린이 수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>

- ▶ : “ ”
- ▶
 - ① ()
 - ② (70% → 수)
※ 22만원('13년) → 24만원('14년) → 27만원('15년) → 30만원('16년)
- ▶ : 2013.3.

국민기초생활보장
수급자의 부양의무자
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(☎ 02-2023-8128)



- 1
3300 () 2 2800

* 대도시 133백만원→ 228백만원, 중소도시 108.5→136백만원

- ,
(4.17→1.04%)



- 4 1,495,550 1,546,399
3.4% 4
1,224,457 1,266,089

- 50 75

- (30)
1 9.5% 163,147



- ()

- ,
30%

<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 (4.17%/
 - 1.04%/)
 - ③ 3.4%
 - ④ (50 →75)
 - ⑤
 - ⑥ (.)
 - ⑦ 30%
- ▶ : 2013.1. (,)

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
(☎ 043-719-2257)

*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

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3, 8617)

- . “ ”
- 2013 .
- , , ,
- (ADHD) .
- (9 ~18) .
- (3 , 1), , , , (2 , 1).
- 30 (1) , .
- , , , , .

*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, 031)333-1900

☞ (참고)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(www.nyhc.or.kr)

<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>

- ▶ : .
- ▶
 - ① : , , ADHD .
 - 9 ~18
 - ② : , , ,
 - ③ : 30 (),
 - ④ : , , , ,
- ▶ : 2012.12.17.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4)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청소년기본법'

**저소득 한부모가족
아동양육비 단가 인상**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
(☎ 02-2075-8713)

- 「 」 12
2013 1 1 7
- 2005
8 5 ,
- 2013 12
5 7

〈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〉

구 분	'05년	'08년	'09년	'10년	'13년
	6	8	10	12	12
	5	5	5	5	7

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>

- ▶ :
- ▶ ① 12
5 7
- ▶ : 2013.1.1.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6)

6 19 2013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

<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>

- ▶ :
▶
①
* (종전)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학교 → (확대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
②
▶ : 2013.6.19

**성폭력 피해자 및
가족에 대한 지원
확대**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8)

■ 2012 10 25

• , 500

• , 19
()

■

• , 2 , 2013 6 19

■

• , 2013 6 19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·해명>보도자료> '성폭력피해자 가족
의료비 지원 확대'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

<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자원 확대>

▶ : .

▶

① (2012.10.25)

- 500

-

* (현행)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→ (확대)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

② (2013.6.19)

'12년	'13년 6월~
. : 6 *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*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	① : 6 (1 6 1) ② : 2 () ③ () : 19 (2 1) ④ : 2 (2 1) ⑤ : ④

③ (2013.6.19)

- : , , ,

- : . .

**아동·청소년대상
성범죄 처벌·관리
강화**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
(☎ 02-2075-8783)

■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2013. 6. 19. 개정
 ■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 제2호
 (아동·청소년이 음란물을 제작·배포하는 행위 등)에
 대한 형량 강화

〈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〉

조항	내용	현행	개정안
7 (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주행 등)		5	5
		3	5
		1 5 ~ 2	2 1 ~ 3
11 (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· 배포 등)		5	5
		7	10
		3 2	7 5
		2	1 ~ 2
		1 ~ 10	3
13 (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)		5 3	1 ~ 10 2 ~ 5

■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
 (아동·청소년의性を 사는 행위 등)에 대한 형량 강화
 (PC),



- 「www.sexoffender.go.kr」
()
() .
- * 현행 : 성명, 나이, 주소(읍·면·동), 신체정보, 사진, 성범죄 요지
- (.
)
(), , ,
.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
국회통과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'

<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>

- ▶ : .
- ▶
 - ① (,
)
 - ② (5 → 5 ,
3 → 5 , .
. . 5 → 5)
 - ③ (13
→ 13 ,)
 - ④ (.
)
 - ⑤ .
 - ⑥
- () ‘ . . ’→()
‘ . .
- , (PC),
,
 - ⑦ (, .
)
 - ⑧ (,
)
- ▶ : 2013.6. (, 2012.12.)

**성폭력범죄 피해자를
위한 피해자 국선
변호사 제도 시행**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648)

■ 2013

()

• 19

• 2013 6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!! 법률조력인

<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>

▶ :

▶

① ,

② , ,

③ ,

④

▶ : 2013.6.19(「 」)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852)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<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 ‘진실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’

<진술조력인 제도>

- ▶ :
 - ①
 - ②
 - ③
- ▶ : 2013.6.19
 - ※ 2012년 11월 현재 예산 심의중으로 시행 시기 변경 가능
 - ※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

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

‘ , ’

•

,

※ 가족관계등록예규, 판례(94다1302)에 따르면, 단독친권자가 사망한
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



2013 7

•

, , , ,


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>

▶ :

▶ :

①

②

③

▶ : 2013.7.1.

**아동의 복리를 위한
입양제도의 개선**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

•

- 2013 7 1

,

,

,

,

•

,



•

15

(19)

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>

▶ :

▶

①

②

③

▶ : 2013.7.1.

6. 고용노동

유망창업기업에 대한
고용창출지원금 지원
대상 업종 확대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
(☎ 02-6902-8474)

■ 2013년 1월 1일부터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. 기존 10개 업종(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, 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)에 ⑬콘텐츠·소프트웨어, ⑭글로벌 헬스케어, ⑮글로벌 교육 서비스, ⑯녹색금융, ⑰MICE·융합관광을 추가한다. (1월 720일)

• 2013년 1월 1일부터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. (U)

* 신성장동력 산업

녹색기술산업	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
첨단융합산업	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
고부가서비스산업	⑬콘텐츠·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 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·융합관광

** 국내복귀(U턴) 기업: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,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,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

<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>

▶ :
▶
① 17 10 (2)
② (U)
③ : 1 1 720 (2 ,
20)
▶ : 2013.1.1.

**고용촉진지원금 지원
요건 완화**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
(☎ 02-6902-8474)



,

- 1 650 860 , 6 2
3 4

•

.

<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>

▶ : ,

▶

- ① 6 3
- ②

▶ : 2013.1. (.)

(예비)사회적기업에
지원하는 인건비 지원
비율 변경
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
(☎ 02-2110-7172)

☐ ()

2013

- 2012 1 90%, 2 80%, 3 70% ,
- 2013 1 90%, 2 70%, 3 50% 2~3년차 하향됩니다.

※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%, 2년차 90%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.

<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>

► : () 2013

▶

①

2012 : 1 90%, 2 80%, 3 70%

2013 : 1 90%, 2 70%, 3 50%

► : 2013.1.1.

**장애인 표준사업장의
중증장애인 의무고용
인원 규모에 따라
차등화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6)



- 2012 11
30% , 50%

-
3 100 , 100 300
, 300

현행	개정	
30%		
50%		
30%	100	100 15
25%	100 300	100 10 + 5
	300	100 5 + 20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
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잡는다

<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>

▶ :

▶

① 100

② 100~300 10%+5 ,

300 5%+20

▶ : 2012.12.

**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
인상 및 산정기준
세분화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13)

■ 2013

- ‘13 1 626,000 3/4
- , 1/2 ~3/4 1/4 782,500 1/2 939,000 1/2

〈현행: 3단계〉

산정기준	부담금
1/2	(1 59)
1/2	(88 5)
	(95 7)

⇒

〈변경: 4단계〉

산정기준	부담금
3/4	(1 626,000)
1/2~3/4	(782,500)
	(939,000)
	(1,015,740)

*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■ , 2013

1,015,740
100 199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('11.7.1.) → 200명~299명('12.1.1) → 100명~199명('13.1.1)

☞ (참고) 전자관보(<http://gwanbo.korea.go.kr>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

<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>

▶ :

▶

① : $\frac{3}{4}$
 , $\frac{1}{2}$ ~ $\frac{3}{4}$
 + $\frac{1}{4}$, $\frac{1}{2}$ +
 $\frac{1}{2}$

②

100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: '11.7.1.부터, 200~299명: '12.1.1부터, 100~199명: '13.1.1부터

▶ : 2013.1.1.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■ 2013

- . 1~2 , , ,
- 400,000 ,
1 5 .

<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>

- ▶ : ,
- ▶
 - ① : () .
() 50 ,
 - ② : 40 ,
1 5
 - ③ : 1 ~ 2
- ▶ : 2013.1.

※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,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
연중 상시 운영 예정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■ 2013

• () 3 3~6

- 1 12,000 , 1 1
17,650

• ,

<자원고용형 기업연수제>

▶ : ()

▶

① : 3,

② : (4)

③ : 3~6

④ : (1 12,000), (1 1
17,650)

▶ : 2013.1.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■ 2012

2

2013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인
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

<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>

- ▶ : .
- ▶
 - ① : (), ,
 - ② : , , ,
- ▶ : 2013.1.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
(☎ 02-2110-7305)



100 50
100 50
15 30
100 30

<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
및 임금감액을 요건 조정>

- ▶ :
① 50%
15 30
② 50% 30%
▶ : 2013.1.()
※ 개정안 입법예고중
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

(☎ 02-2110-7399)

■ 2013. 1. 1. 4,860

• 8 38,880 ,

40 1,015,740 (4,860

×209) , 44 1,098,360

(4,860 ×226) .

• .

• ,

• ,

- , 3

(1) .

10%(4,374) 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
시간당 4,860원으로 결정

<최저임금액 인상>

- ▶ : '12.8.1.
- ▶ : 4,860
- ▶ : 2013.1. ~ 12.

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
(☎ 02-2110-7419)

- 2010 12 1 4

$$\begin{array}{r} - 2013 \quad 1 \quad 1 \\ 100 \quad 100 \end{array}$$
[illegible]

- 2013.1.1
1 1 30

※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렛·브로셔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
(☎ 02-6922-0914)

■ 2013

■ , 80%

☞ 「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」 참조('13. 1. 1. 오픈 예정)

■ 2013 3 1

() 3 *

13

**

[illegible]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
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<2013년도 안전인증·지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>

- ▶ : .
- ▶
- ① (8 → 11)
- ② (3 → 13)
- ▶ : 2013.3.1.

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과
(☎ 02-6922-0951)

■ 10
60%

- 33%

• 10

-

<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>

▶ :

▶

① 10

② 1,000 ()

▶ : 2013.1.

**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
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**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23)

■ , .

• .

• ,

• (

)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

<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>

- ▶ :
- ▶
- ① : 『 』 2 . .
- ② : () ☞
() ☞ () ☞
() ☞
- *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
- ▶ : 2012.11.18.

● “ ” ()

2023, 150m² 5 * : 2015

[illegible]

▶ :
▶
① 1 1 (1)
② 2
③ 1 1
▶ : 2013.2.23.

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
(☎ 02-2100-5316)

40

• 2012 21 30

2013 21 4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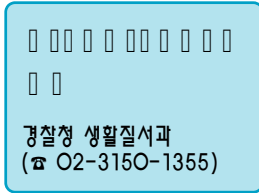
•
() 40

■

• , , , ,
5
- 3 (, ,)
- 2 (, , , , ,
, 2)

<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>

- ▶
- ① : 30 → 40
 - ②
 - () , , , ,
 - () < 3> , ,
< 2> , , , ,
, , 中 2



■ 2013.3.22. (17→45 ,
28) , ,
.
.
()
28 * 2013.3.22
() ,
5 , 8 , 16 .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
- ① 빈집등에 침입, ② 흉기 은닉휴대, ③ 폭행 등 예비, ④ 거짓신고, ⑤ 시체
현장변경 등,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, ⑦ 관명사칭, ⑧ 마시는 물
사용방해, ⑨ 의식방해, ⑩ 타인의 가축·기계 무단조작, ⑪ 위험한 불씨 사용,
⑫ 거짓 인적사항 사용, ⑬ 자릿세 징수 등, ⑭ 총포 등 조작장난, ⑮ 장난전화
등, ⑯ 지속적 괴롭힘, ⑰ 단체가입강요, ⑱ 과다노출, ⑲ 지문채취 불응, ⑳ 무임
승차 및 무전취식, ㉑ 물품강매·청객행위, ㉒ 광고물 무단부착, ㉓ 결행위, ㉔ 동
물등에 의한 행패, ㉕ 출판물 부당게재, ㉖ 거짓광고, ㉗ 업무방해, ㉘ 암표매매

• ,
 ,
 ,
2013.3.22 .
• .

☞ (참고) 경찰청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>제2012-30,31호 경범죄
처벌법 시행령, 규칙 입법예고

<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>

- ▶ :
▶
① ,
② , ,
③ ,
▶ : 2013.3.22. (「 」)

8. 보훈 · 국방

111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
(☎ 02-2020-5179)

☐

•

, 2013

4%

•

•

7

34 8

1~3

456

1

2

●

42 2

140 2

•

☐

2 9

74 5

, 6.25

4

102 4

•

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

<201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>

▶

▶

① 2012

4%

—

2%

②

(15~45% → 20~60%)

③

2

(

→ 20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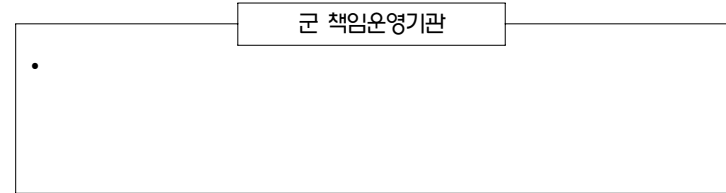
 $12 \rightarrow 14 \quad)$

► : 2013.1.1.

✱ ' 12.12.28

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
(☎ 02-748-5380)

2013 , 3 , 3



• 2009 2012 14 25% 1,600

• 2013 4,600 7,200 4,000 3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실시

<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>

- ▶ : ,
- ▶ ① 3 ,
※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(14개)
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
- ▶ : 2013.1.1.

□, 2013 6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
(☎ 02-748-5107)

· ‘ , ‘ , ‘ , 1 .

,

<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>

- ▶ :

▶ :

▶ : 2013.2.()

※

국방부 인력관리과
(☎ 02-748-5135)



- 5 3
- 6 7
- 3 4

<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>

▶ (:)

구 분	이등병→일등병	일등병→상등병	상등병→병장	병장→전역
현 행	5	6	7	3 (해군 5, 공군 6)
조 정	3 (-2)	7 (+1)	7	4 (해군 6, 공군 7) (+1)

▶ : 2013.1.1.

**여성군인의 모성보호
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**

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
(☎ 02-748-5173)



3

*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
당직근무 면제



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⇨ 군의관 소견서(또는
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
택일하여 제출

<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>

▶ :



① 3

② / ()

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), 출생
증명서,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

▶ : 2013.1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

<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>

- ▶ :
▶
①
- ▶ : 2013.1.1.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

• ,

,

•

(www.yebigun1.mil.kr/)

<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>

▶ :

▶

①

※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

▶ : 2013.1.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1)

▶ :
1
▶
① : 56
()
② : 3 (, ,)
③ : 2013 ~2015
▶ : 2013.
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- 2012 15% .
- , .

<병 봉급 인상>

- ▶ :
- ▶ : 2012 15% (:)

구 분	계급	2012년	2013년	증액
병 봉급 인상(15%)	이등병	81,500	93,700	12,200
	일등병	88,000	101,200	13,200
	상등병	97,500	112,100	14,600
	병장	108,000	124,200	16,200

- ▶ : 2013.1.1.(,)
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■ 2013

.

•

-

,

-

.

<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>

▶ :

▶

- ① 10% (: 15,000 → 16,500)
- ② 10% (29,700 → 32,700)
- ③ (→)

▶ : 2013.1.1. (,)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55)



- 2012
2013

「 」 .

- 3

,

▶ : '12~' 16 「
」

- - ① • 3
 - ②
- : 2013.1.1.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8)



6

• 2013

2013

1

<군 병원 외래진료 서틀 운영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: 2012 1 ~ 2013 6
* 노선 : 고양 4개, 홍천 3개
 - ② , 2 : 2013 7 ~
* 노선 : 양주 4, 일동 3, 춘천 3, 강릉 2, 해병2사 1개
- ▶ : 2013.7.1.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9)



, A
2013

- 2013 1
3 ,
2014 , 2015
A 1
.
- A

<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>

- ▶ : A 2012
- ▶
 - ① 2013 1
A
 - ② 2014
 - ③ 2015 .
- ▶ : 2013.4.1.

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
☎ 02-748-5757



“

”

, 2012 10 ‘

,

42,000

“

”

<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>



:

“

”

,



①

“

”

,

②

- 2012 3 ~ :

- 2012 7 ~ :

※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

- 2012 9 24 : ()

- 2012 10 1 ~ :



: 2012.10.1.



■ 2013 「 」, 「 」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>

- ▶ :
- ▶
 - ① 「 」, 「 」
- ▶ : 2013.2.(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- 「 」

$$\begin{pmatrix} \vdots \\ \vdots \end{pmatrix}$$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>
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)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20% ,
5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>

- ▶ :
 - ▶
 - ①
 - 20%
 - 5
 - ▶ : 2013.2.()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, 2013
(50%)

5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위사업정보법령 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>

- ▶ : .
 - ▶
 - ① (50%)
 - ② 「 5
 - ▶ : 2013.2.()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•

, 2013

- 50 (5
5 , 1) 2
30% 0.5%p

• ,

- ,

(10%)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(0.5%p)
 - ②
- 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)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
(☎ 02-2079-6454)



50%

• 「 2
50% , 「
」 3
5 50%

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위사업정보법령 행정규칙

<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>

▶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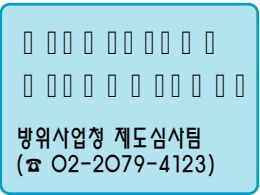
▶

① 10 2 3
5
50%

▶ : 2013.2. (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▶ 시행일 : 2013.3.19.



■ 2012 12

-
-
-
-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>

- ▶
 - ① , ,
 - ②
 - ③ .
- ▶
 - ①
 - ②
 - ③ .
 - ④ .

▶ 시행일 : 2012.12.18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

병무청 징병검사과
(☎ 042-481-2918)



2012 12 21

.

2002

5~6

1

• ,

()

,

.

<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>

▶ :

(2005 6)

▶

① : 384

②

- : 7,885㎡, 5,558㎡(1 , 3)

- : 2011 4 / : 2012 12 17 (: '12.12.21.)

③

- (→

1.5km)

- . ,

▶ : 2012.12.21.

☎ ☎ ☎ ☎ ☎ ☎ ☎ ☎
☎ ☎ ☎ ☎ ☎ ☎ ☎ ☎
병무청 징병검사과
(☎ 042-481-2916)



• 「

,

• , 2013
19

<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>

▶ : 19

▶

①

19

▶ : 2012.12.20.

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
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
경찰청 이관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38)

■ () .
 , 2013
 .
 .
 .
 ,
 .

☞ (참고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·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

<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 업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>

▶ : .

▶
① . (→)

▶ : 2013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16)



• 2013

* 다만, 의대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
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

<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>

- ▶ :
- ▶
① ,
- ▶ : 2013.1.1.

**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
분야 선택기준 조정**
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

200

100

.

•

, 「

」

200

, 「

」

140

2013

<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>

▶

:

▶

①

(200

→ 100)

▶

: 2012.12.20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

15

.

•

2 10
10

.

,

2

,

.



,

.

<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>



:



①

(

2 10

→

15

)

②

(

→

)



: 2012.12.20.

► : 2012.12.20.



병무청 병역자원과
(☎ 042-481-2965)

□ ‘ , 3

<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자 허가 취소>

► www.pearson.com

① ‘ , 3

► : 2012.12.20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 □ □ □
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 (☎ 042-481-2992~3)

■ 「
 • 「
 , (6) 3
 1 2 2013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조정>

- ▶ : (6) 「 」
- ▶
- ① 「 」 1 (3 → 2)
- ▶ : 2013.2.
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(☎ 042-481-2992~
-)

■ 3

• ,

•

6·25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>

▶ :

▶ :

①

②

,

6·25

▶ : 2013
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
(☎ 02-2100-6243)

■
·
·
·
(
)
,
- , 2013
·
·
·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
(☎ 02-2100-6243)

<2013년도 공역간편미 시공 주요내용>	
▶	()
▶	, 5
▶	, 1~2 .
▶	. 4 3.4
	, 1 (2) 4
▶	
▶	. (4)
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
 (☎ 02-2100-6556)

- 2013 3 3~4 5
- '13 3
 - '3-5
 - '3-5
 - 2013 3-5
 - 3-5

〈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〉

구 분	연령	2012년	2013년
, (	5	, 20	, 22
	4	70%, 17.7	
	3	70%, 19.7	

※ 국·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('12년) 5.9만원→('13년) 6만원

☞ (참고) 교과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만 3~4세아도 '누리과정(공통과정)' 도입,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

☎ ☎ ☎ ☎ ☎ ☎ ☎ ☎
☎ ☎ ☎ ☎ ☎ ☎ ☎ ☎
☎ ☎ ☎ ☎
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
(☎ 02-2100-6521)

■ ,
.
• •
2013 2
-
1
,
※,
• ,
, 2013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절차 개선

<2013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>

▶ : , ,

▶

① ((父) · (母))

②

▶ : 2013.2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□ □ □ □ □

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
(☎ 02-2100-6415)



- 2012 70%
2013 100%

- , 1 2012 48 (4)
2013 60 (5)

- ,

〈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〉

구 분	2011년	2012년	2013년
	40%	70%	100%
1	36 (3)	48 (4)	60 (5)
	1,758	2,880	3,388

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
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
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
제도 개선

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
(☎ 02-2100-6482)

■ , .

• 2013 3 1

“75 ” “80 ” .

- , (13.1) ‘ .

.

〈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실시 횟수〉

대상자	전문대학		4년제	교육대학원	
	2년제	3년제 이상		5학기제 이상	4학기제
2013.3.1	1	2	2	2	1
2013 ()		1	1	1	

• 3

2 (,) 2012 ,

(,) 2013 .

- , 1 ‘ ()’

‘ ()’

, 2 ,

.

- ,

2013 9 1

‘ , ,

3 (5) .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.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
(☎ 02-3704-9523)

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11월 18일, ‘예술인 복지법’ 시행,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

<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>

- :
►
①
②
③
④
► : 2013.1.1.

☎ 02-3704-9406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



2013 2 18 .

- *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(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5호)
-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

- 2005 , 「 」 .
- , . ()
 ,
 .
• , , ,
 ,
 .
- 1 2 ,
 .
「 」 16 2 1
(1) .

☞ (참고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

<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>

- ▶ :

▶ ①
(1 2 ,
·)
② 「
」

▶ : 2013.2.18.

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
(☎ 02-3704-9311)

,

•

•

,

•

• ,

•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자료>훈령·예규·고시

▶

②

1. 2. 3. 4. 5. 6. 7. 8. 9. 10. 11. 12. 13. 14. 15. 16. 17. 18. 19. 20. 21. 22. 23. 24. 25. 26. 27. 28. 29. 30. 31. 32. 33. 34. 35. 36. 37. 38. 39. 40. 41. 42. 43. 44. 45. 46. 47. 48. 49. 50. 51. 52. 53. 54. 55. 56. 57. 58. 59. 60. 61. 62. 63. 64. 65. 66. 67. 68. 69. 70. 71. 72. 73. 74. 75. 76. 77. 78. 79. 80. 81. 82. 83. 84. 85. 86. 87. 88. 89. 90. 91. 92. 93. 94. 95. 96. 97. 98. 99. 100. 101. 102. 103. 104. 105. 106. 107. 108. 109. 110. 111. 112. 113. 114. 115. 116. 117. 118. 119. 120. 121. 122. 123. 124. 125. 126. 127. 128. 129. 130. 131. 132. 133. 134. 135. 136. 137. 138. 139. 140. 141. 142. 143. 144. 145. 146. 147. 148. 149. 150. 151. 152. 153. 154. 155. 156. 157. 158. 159. 160. 161. 162. 163. 164. 165. 166. 167. 168. 169. 170. 171. 172. 173. 174. 175. 176. 177. 178. 179. 180. 181. 182. 183. 184. 185. 186. 187. 188. 189. 190. 191. 192. 193. 194. 195. 196. 197. 198. 199. 200. 201. 202. 203. 204. 205. 206. 207. 208. 209. 210. 211. 212. 213. 214. 215. 216. 217. 218. 219. 220. 221. 222. 223. 224. 225. 226. 227. 228. 229. 230. 231. 232. 233. 234. 235. 236. 237. 238. 239. 240. 241. 242. 243. 244. 245. 246. 247. 248. 249. 250. 251. 252. 253. 254. 255. 256. 257. 258. 259. 260. 261. 262. 263. 264. 265. 266. 267. 268. 269. 270. 271. 272. 273. 274. 275. 276. 277. 278. 279. 280. 281. 282. 283. 284. 285. 286. 287. 288. 289. 290. 291. 292. 293. 294. 295. 296. 297. 298. 299. 300. 301. 302. 303. 304. 305. 306. 307. 308. 309. 310. 311. 312. 313. 314. 315. 316. 317. 318. 319. 320. 321. 322. 323. 324. 325. 326. 327. 328. 329. 330. 331. 332. 333. 334. 335. 336. 337. 338. 339. 340. 341. 342. 343. 344. 345. 346. 347. 348. 349. 350. 351. 352. 353. 354. 355. 356. 357. 358. 359. 360. 361. 362. 363. 364. 365. 366. 367. 368. 369. 370. 371. 372. 373. 374. 375. 376. 377. 378. 379. 380. 381. 382. 383. 384. 385. 386. 387. 388. 389. 390. 391. 392. 393. 394. 395. 396. 397. 398. 399. 400. 401. 402. 403. 404. 405. 406. 407. 408. 409. 410. 411. 412. 413. 414. 415. 416. 417. 418. 419. 420. 421. 422. 423. 424. 425. 426. 427. 428. 429. 430. 431. 432. 433. 434. 435. 436. 437. 438. 439. 440. 441. 442. 443. 444. 445. 446. 447. 448. 449. 450. 451. 452. 453. 454. 455. 456. 457. 458. 459. 460. 461. 462. 463. 464. 465. 466. 467. 468. 469. 470. 471. 472. 473. 474. 475. 476. 477. 478. 479. 480. 481. 482. 483. 484. 485. 486. 487. 488. 489. 490. 491. 492. 493. 494. 495. 496. 497. 498. 499. 500. 501. 502. 503. 504. 505. 506. 507. 508. 509. 510. 511. 512. 513. 514. 515. 516. 517. 518. 519. 520. 521. 522. 523. 524. 525. 526. 527. 528. 529. 530. 531. 532. 533. 534. 535. 536. 537. 538. 539. 540. 541. 542. 543. 544. 545. 546. 547. 548. 549. 550. 551. 552. 553. 554. 555. 556. 557. 558. 559. 560. 561. 562. 563. 564. 565. 566. 567. 568. 569. 570. 571. 572. 573. 574. 575. 576. 577. 578. 579. 580. 581. 582. 583. 584. 585. 586. 587. 588. 589. 590. 591. 592. 593. 594. 595. 596. 597. 598. 599. 600. 601. 602. 603. 604. 605. 606. 607. 608. 609. 610. 611. 612. 613. 614. 615. 616. 617. 618. 619. 620. 621. 622. 623. 624. 625. 626. 627. 628. 629. 630. 631. 632. 633. 634. 635. 636. 637. 638. 639. 640. 641. 642. 643. 644. 645. 646. 647. 648. 649. 650. 651. 652. 653. 654. 655. 656. 657. 658. 659. 660. 661. 662. 663. 664. 665. 666. 667. 668. 669. 670. 671. 672. 673. 674. 675. 676. 677. 678. 679. 680. 681. 682. 683. 684. 685. 686. 687. 688. 689. 690. 691. 692. 693. 694. 695. 696. 697. 698. 699. 700. 701. 702. 703. 704. 705. 706. 707. 708. 709. 710. 711. 712. 713. 714. 715. 716. 717. 718. 719. 720. 721. 722. 723. 724. 725. 726. 727. 728. 729. 730. 731. 732. 733. 734. 735. 736. 737. 738. 739. 740. 741. 742. 743. 744. 745. 746. 747. 748. 749. 750. 751. 752. 753. 754. 755. 756. 757. 758. 759. 760. 761. 762. 763. 764. 765. 766. 767. 768. 769. 770. 771. 772. 773. 774. 775. 776. 777. 778. 779. 780. 781. 782. 783. 784. 785. 786. 787. 788. 789. 790. 791. 792. 793. 794. 795. 796. 797. 798. 799. 800. 801. 802. 803. 804. 805. 806. 807. 808. 809. 810. 811. 812. 813. 814. 815. 816. 817. 818. 819. 820. 821. 822. 823. 824. 825. 826. 827. 828. 829. 830. 831. 832. 833. 834. 835. 836. 837. 838. 839. 840. 84

► : 2013.2.()



- 2013 1 TV TV
(HD) .
- 2012 12 31 TV
TV
.
- TV TV
TV *
- (UHF) .
- *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
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,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

〈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〉

| 구 분 | 경남 | 부산 | 대전
충남 | 전북 | 강원 | 광주
전남 | 대구
경북 | 수도권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'13.1.4 | '13.1.9 | '13.1.16 | '13.1.23 | '13.1.25 | '13.1.30 | '13.2.6 | '13.3.31 |

※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(미표시 지역은
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)

- TV TV
.
- 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
정부지원 안내”

☎ 112 • ☎ 119 ☎ 112 ☎ 112
☎ 112 ☎ 112 ☎ 112 ☎ 112
'☎ 112 ☎ 112 ☎ 112 ☎ 112
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
(☎ 02-750-2542)

■ .
2013 1
『107 』
•
(, , SMS)
, 2013 1 1
107
-
,
.

*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

☞ (참고)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www.relaycall.or.kr>)

<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>

- ▶ :
- ▶
 - ① 107
 - ② (107)
- ▶ : 2013.1.1.



■ DTV 700MHz
740~752MHz '12.12

• , 700MHz
('13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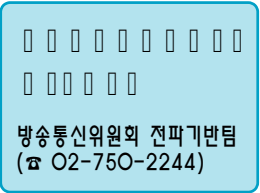
• 900MHz

※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, 200만원 이하
과태료 부과

■ 2013 700MHz

※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·생산·판매 시 생산 중지 등
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함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>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



•

2013 1 , , ,

•

2013 , ,
(20cm)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

<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>

▶ :

▶

- ① (→ /)
- ② (→20cm)

▶ : 2013.1.()

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
(☎ 02-750-2753)



•

, 2013 2

-

100

100

•

,

,

<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>

▶

:

▶

①

②

1,000

③

▶

: 2013.2.

10. 농식품·산림

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
(☎ 044-201-1553)



“ ” ’13 ~ ’14

•

() *

* 농어촌주택개량사업, 빈집정비, 전원마을조성사업, 농어촌뉴타운사업,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

※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'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

<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>

- ▶ : ,
- ▶
 - ① ,
- ▶ : 2013.1.1.
 - ※ (참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농림수산물부 농어촌사회과
044-201-1574

농림수산물부 농어촌사회과
(☎ 044-201-1574)



5

* 2013년도에 전국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,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
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

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
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<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>

- ▶ :
- ▶
 - ① . , ,
5 .
- ▶ : 2013.1.1.

**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로
우수기업에 다양한
혜택 제공**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
(☎ 044-201-1590)

- ...
- ‘ ... ()
- 3
-

☐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·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, 정책사업, 물품구매·용역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어촌을 사랑하세요, 기업이 성장합니다.

<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>

- ▶ ...
- ▶
 - ① ()
 - ② (,),
- ▶ : 2013.1.1.

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
(☎ 044-201-2419)



•

•

•

•

12

() , , ,
(,) 16
.

- (, 12) , (),
, , , , , , , , , ,

- (, 16) , , , , ,
(,), ,

* 배달용 돼지고기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 등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

$$\begin{aligned}
- & \quad : (\quad) \quad 1/2 \rightarrow (\quad) \\
- & \quad : (\quad) \quad \rightarrow (\quad) \\
- & \quad : (\quad) \quad \rightarrow (\quad) \\
& (2 \quad)
\end{aligned}$$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)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

<201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>

▶ : .

▶

①

② (12 → 16)

③ (→ . ,
→)

④

- () 1/2 → ()
→ () →
(2)

▶ : 2013.6. ()

※ (참정) '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 개정절차
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농림수산물부
검역정책과

(☎ 044-201-2457)

2004

2013 (3)

2012 11 , “

”

,

,

1

.

-

,

,

,

.

•

,

.

.

(참고) 농림수산물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개시

<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)

- ※ 미국 내 입법절차(의견수렴, 60일)가 진행중이며,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'13.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(30일 이후 시행)
-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 실시(+150일)

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
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
우대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
(☎ 044-201-1535~6)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

<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>

- ▶ :
▶
① ()
▶ : 2013.1.23.

**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
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**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물개발과
(☎ 044-201-2639)

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(65)

2013 1 “

” “ ”

* 개인능력 :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·운영, 마을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회계 및 고객관리,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

<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>

- ▶ : ,
- ▶
- ① ()
- () : 19 65 , : 30 60
- () . 19
- ()
- ▶ : 2013.1.1.

은
완
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
(☎ 044-201-1737)



,
.
.
60
2013 64
-
,
.
.
()
70
75
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
농지매입사업

<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>

- ▶ :
- ▶
 - ① (60 → 64)
 - ② (70 →
75)
- ▶ : 2013.1.1.

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
단계적('13~'16년)으로
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
대상 축종을 확대
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정책과
(☎ 044-201-2317)

- (, , ,)
- 4 , ,
3 2013
,
- (, , ,)
2013 ~2016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: m²)

| 규모 | 기업 | 전업 | 준전업 | 소규모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| '13 | '14 | '15 | '16 |
| | 1,200 | 600 ~1,200 | 300 ~600 | 50 ~300 |
| | 2,000 | 1,000 ~2,000 | 500 ~1,000 | 50 ~500 |
| | 2,500 | 1,400 ~2,500 | 950 ~1,400 | 50 ~950 |
| | 2,500 | 1,300 ~2,500 | 800 ~1,300 | 50 ~800 |

-
- 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m², 돼지 등 50m²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
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- 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- ▶ :
- ▶
- ① (, , ,)
2013 ~2016 (
- 1)
- ②
- ▶ : 2013.2.23.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

(☎ 044-201-2342~3)

- 50% , 12~
- 15% .

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(www.mit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▶ :

▶ ①

- () : 1,200 (3%, 2)

▶ : 2013.1.1.

※ (참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A diagram showing base ten blocks. The top row contains 13 tens blocks (each labeled '10') and the bottom row contains 2 ones blocks (each labeled '1').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•

•

3

• •

—

40

•

•

•

,

2

1

▶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

<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>

▶ :

2

▶

① 2013

3

* 도서·오지·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은 제외

► : 2013.1.1.

농림수산물부
방역총괄과

농림수산물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

- 2012 3
('13), ('14), ('15)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- ▶ :
① '13
* ('12) 산란계 → ('13) 돼지 →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젓소
▶ : 2013.5.()
※ (잠정)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'
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**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
전국단위로 일원화 및
부착대상 확대**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6)



· , .
· , . .

· ,

*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.1.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,
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.1.1부터는 전면 시행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
부착요령

<어선표지판 사용 개선>

▶ :

▶

①

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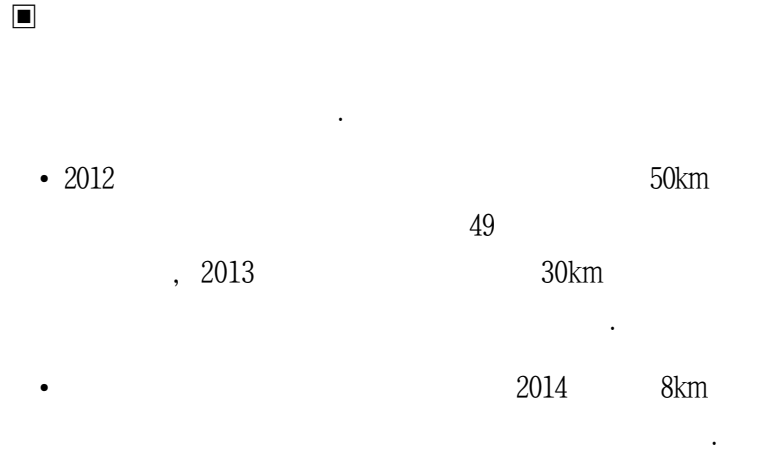
- : , ,

▶ : 2013.1.1.

농림수산식품부
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공지사항

조건불리지역
수산물직불제
대상지역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43)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사업

<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>

▶ :

▶

①

- 50km → 30km

▶ : 2013.1.1. ()

※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환경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22)



- * 유기수산물 :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
- * 무항생제수산물 :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
- 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: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(해조류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6.2.

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
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
어촌·어항법 개정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2)



•



• 「 」 45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

<어촌·어항법 개정 항목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4.23.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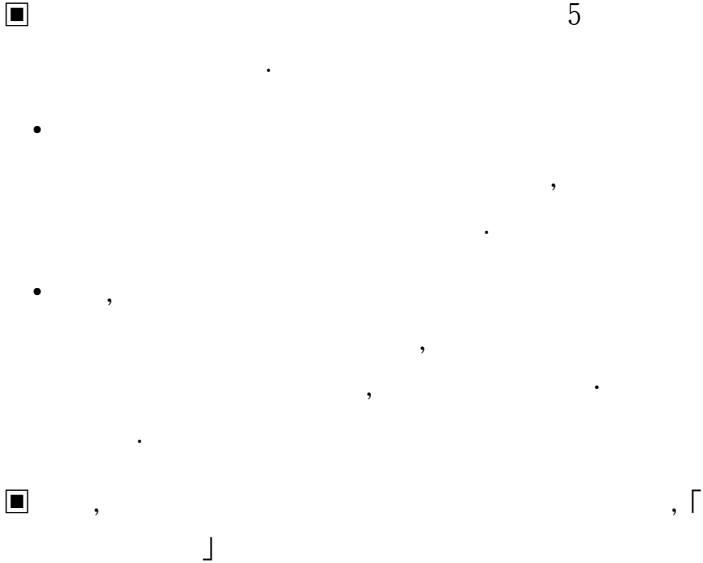
0%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)정보광장)법령정보)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
<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>

- ▶ :
 - ▶
 - ①
 - ②
- ▶ : 2013.1.1.

농림수산식품부
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7)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

<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>

- ▶ :
·
- ▶
 - 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km²확장(764km² → 776km²)
 - ② 'B' , 43km² (133km² → 176km²)
 - ③ 'C' , 36km² (102km² → 138km²)
- ▶ : 2013.1.1.

환경농산물

인증제도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72)

■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•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•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(500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>

- ▶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▶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①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②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③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▶ 「환경농산물 인증제도」는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: 2013.6.2.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82)

•

●

()

•

•

(3)

•

•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

<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>

▶ :

▶

①

•

(3)

②

(

)

▶ : 2013.4.23.

식량작물 품종
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
(☎ 044-201-1654)



• ‘5
3 , 2013
6 「 」 ‘7
1 ,

*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: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
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

| <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>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▶ | : |
| ▶ | |
| ① | 7 1 |
| (| : 5 3) |
| ▶ | : 2013.6.2. |

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
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7)

- •

·

,

.

·

「

」

(2013.1.18)

.

-

,

.

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>

▶

:

▶

① 5

②

③

,

▶

: 2013.1.18.

농어업 FTA 보완대책
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
투명하게 공개

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9)

■ . FTA 「FTA 」

* 한·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·미 FTA 보완
대책」('08~'17)을 마련 추진

• 2013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자유무역협정체결에
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
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

▶

①

90

②

5 31

▶

: 2013.1.1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

산림청 목재생산과
(☎ 042-481-8875)

■ , , .

• . , .

- 2013 5 . .

• .

• .

☞ (참고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• , .

• .

<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>

▶ :

▶

① . . .

② ,

▶ : 2013.5.24.

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
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
지도사) 자격증 발급
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
(☎ 042-481-886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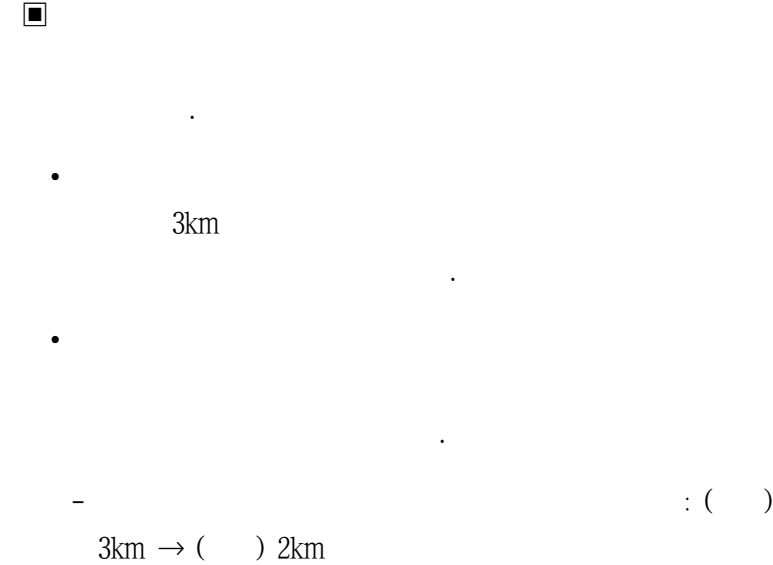
- , , .
- 「 (12.7.26)
-
- (, 70 , 30)
- , .
-

☞ (참고)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<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>

- ▶ :
- ▶
- ① (, ,)
- ② .
- ▶ : 2013

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
및 산림관리 금지구역
지정범위 축소
(3 → 2km)
산림청 산림병해충과
(☎ 042-481-4076)



<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>

▶ :

▶

① (3km → 2km)

▶ ()

① (3 3)

* '12.12.6부터 시행

② (7)

* '12.12.9부터 시행



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|
| ○ 기획재정부 | 203 |
| ○ 교육과학기술부 | 203 |
| ○ 법무부 | 206 |
| ○ 국방부 | 207 |
| ○ 행정안전부 | 210 |
| ○ 문화체육관광부 | 211 |
| ○ 농림수산물부 | 213 |
| ○ 지식경제부 | 219 |
| ○ 환경부 | 221 |
| ○ 보건복지부 | 223 |
| ○ 국토해양부 | 229 |
| ○ 여성가족부 | 243 |
| ○ 고용노동부 | 245 |
| ○ 방송통신위원회 | 249 |
| ○ 국가보훈처 | 251 |
| ○ 금융위원회 | 251 |
| ○ 관세청 | 252 |
| ○ 병무청 | 253 |
| ○ 방위사업청 | 255 |
| ○ 경찰청 | 258 |
| ○ 소방방재청 | 259 |
| ○ 산림청 | 260 |
| ○ 중소기업청 | 261 |
| ○ 특허청 | 262 |
| ○ 식품의약품안전청 | 262 |



| 기획재정부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 () |
| ' 12.12.28 | , | ' 13 1 | |
| | | | |
| 교육과학기술부 | | | |
| 1. | ○ | ○ | ·
(12.11) |
| | | | (02-2100-6243) |
| 2. · | ○ 2
() | ○ , ,
-
○ ·
○
○ | (13.1) |
| | ○ · | | (02-2100-6243) |

| | | | () |
|-------------|--|--|---|
| 3. 5
3-4 | < . >
· 5 : .
5
· 3,4
r :
L :
< >
· 5 :
· 3,4 : 70%
< >
·
· 3~5 5.9
(,)
·
· 5 20
· 4 17.7
· 3 19.7 | < . >
· 3,4,5 : . 3-5
· 3,4,5 :
< >
< >
- 3~5 6
(,)
< >
·
- 3~5 22 | ,
(13.3.1.)
(02-2100-6556) |
| 4. | o ()
o | o ()
※ 온라인 신청 시, 부(父)·모(母) 모두
공인인증서 필요
o
☞ (참고)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>알림마당>
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
개선 | ·
(13.2.)
(02-2100-6521)
(02-739-3744) |
| 5. | o : 40%
o : 1 36
(3) | o : 70%
o : 1 48
(4) | -
(02-2100-6415) |

| | | | () |
|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| <p>○ 100 75</p> | <p>○
- ,
100 75
- ,
100 80</p> | <p>(‘13.3.1.)</p> |
| | ○ | ○ ()
‘ . , | (02-2100-6482) |
| | <p>○ : 3
- (1) ,

- (2) ,

- (3) ,</p> | <p>○ : 2 (2012)
- (1) (), ()

- (2) ,
※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</p> | <p>(‘12.8)
(‘13)</p> |
| | <p>○ : 3
- (1) ,
- (2)
- (3) ,</p> | <p>○ : 2 (2013)
- (1) (), ()
- (2) ,
※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</p> | (02-2100-6482) |
| | < > | <p>○
‘ , , (‘13.9.1)
3 (5)</p> | <p>(‘12.8)
(‘13.9.1.)</p> |
| | | | (02-2100-6482) |

| 법무부 | | | | |
|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|
| | | | | () |
| 1. | | ○ 19

※ 관련법 : 아동·청소년의
성보호에 관한 법률 | ○

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☞ (참고)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
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
미!법률조력인 | ('13.6.19) |
| | | | | (02-2110-3648) |
| 2. | | < > | ○

.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
권관련뉴스>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
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' | ('13.6.19) |
| | | | | (02-2110-3852) |
| 3. | 1 | ○ | ○ | ('13.7.1.) |
| | | | ○ | |
| | | |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(02-2110-3164) |
| | 2 | ○ | ○ | ('13.7.1.) |
| | | | ○ | |
| | | |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(02-2110-3164) |

| | | | | () |
|-----|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. | 1 | ○ | ○ : | (‘13.7.1.) |
| | | |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(02-2110-3164) |
| | 2 | ○ | ○ | (‘13.7.1.) |
| | | |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(02-2110-3164) |
| | 3 | ○ 15 | ○ | (‘13.7.1.) |
| | | |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(02-2110-3164) |
| 국방부 | | | | |
| 1. | ○ 14
※ 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
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
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
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
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
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
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
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
공군83정비창 | ○ , 3 ,
3 | 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
'13년 1월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| (‘11.8.20.)
(‘13.1.1.) |
| | | | | (02-748-5380) |
| 2. | < > | ○ 3 | ○ . | (‘13.6.1.) |
| | | | | (02-748-5121) |
| 3. | < > | ○ - | | (‘13.2.) |
| | | | | (02-748-5107) |

| | | | () |
|----|--|---|--|
| 4. | ○
- : 5
- : 6
- : 7
- : 3
(5 , 6) | ○
- : 3 (-2)
- : 7 (+1)
- : 7
- : 4 (+1)
(6 , 7) | <div>'13.1.1)</div> <div>(02-748-5135)</div> |
| 5. | < > | ○ 3
- | <div>'13.1.)</div> <div>(02-748-5173)</div> |
| | ○ , , | ○ (,) , , | <div>'13.1.)</div> <div>(02-748-5173)</div> |
| 6. | ○
: | ○
: , | <div>'13.1.1)</div> <div>(02-748-5245)</div> |
| 7. | ○
1~2 , | ○ , | <div>'13.1.1)</div> <div>(02-748-5245)</div> |

| | | | () |
|-----|--|--|---|
| 8. | ○ | ○
- 13 ~15 1
* 서울특별시 3개구(광진, 성동, 동대문)
예비군 대상 /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 | -
'13.
(02-748-5241) |
| 9. | ○
81,500
88,000
97,500
108,000 | ○ (15%)
93,700 (12,200)
101,200 (13,200)
112,100 (14,200)
124,200 (16,200) | ('13.1.1.)
(02-748-6613) |
| 10. | ○
-
* 갑지역 : 15,000원
* 을지역 : 12,000원 | -
* 갑지역 : 16,500원
* 을지역 : 13,200원 | ('13.1.1.)
(02-748-6613) |
| | ○ ()
- : 29,700 | - : 32,700 | ('13.1.1.)
(02-748-6613) |
| | ○
- | - | ('13.1.1.)
(02-748-6613) |
| 11. | ○ | ○ | ('12.9.22.)
('13.1.1.)
(02-748-6655) |

| 행정안전부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. | ① | | 10% | | | 10% | ('13.1.) |
| | | | 20% | | | 40% | |
| | | | | | | 20% | |
| | | | | | | 40% | |
| | | | 1
0.03% | | | | |
| | | | - | · () | | 10% | |
| | | | 80% | | | | |
| | | | 10% | | | | |
| | | | 10% | | | | |
| | | (I) | | | | | |
| | | | 30% | | | | |
| | (II) | | | | | | |
| () | | | | | | | |
| | 10% | | | | | | |
| | 1
0.03% | | | | | | |
| ② | | 10% | () | | 5% | (02-2100-3916) | |
| | | | () | | 1 0.03% | | |

[illegible]

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| 1 | | 10% | | 10% | (13.1.) | |
| | | | 20% | | 40% | | |
| | | | | | 20% | | |
| | | | | | 40% | | |
| | | | 1
0.03% | | | | (02-2100-3916) |
| | | | - | •
() | 10% | | |
| | | | 80% | | | | |
| | | | 10% | | | | |
| | | | 10% | | | | |
| | | (I) | | | | | |
| | | | 30% | | | | |
| | | (II) | | | | | |
| | 10% | | | | | | |
| | 1
0.03% | | | | | | |
| 2 | | | 10% | () | 5% | | |
| | | | | () | 1 0.03% | | |

| | | | | () |
|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| 1 | ○

- : 75%
- : 50% | ○

- 75% | ('13.1) |
| | 2 | | ○

2 50% | |
| | 3 | ○ 2012
- 140 | ○ 2015
- 140 | (02-2100-3926) |
| | 4 | ○ 2012 ,
- () 60㎡.
- () 40㎡
40~60㎡ 50%
60~85㎡ 25% | ○ 2015 ,
- () 60㎡.
- () 40㎡
40~60㎡ 50%
60~85㎡ 25% | |
| 문화체육관광부 | | | | |
| 1. | | 〈 〉 | ○ .

○

○
○

 | |

| | | | | () |
|----|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 | |
| 2. | | < > | ○
 | |

| 농림수산식품부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() |
| 1. | ○
- . | ○
○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
농어촌정비법 | (‘13.1.)

(044-201-1553) |
| 2. | < > | ○ . ,
5
.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
촉진에 관한 특별법 | (‘13.1)

(044-201-1574) |
| 3. | < > | ○ ()

○ ,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
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. | (‘13.1.)

(044-201-1590) |

| | | | () |
|----|--|---|--|
| 4. | <p>○ 98%</p> <p>2</p> <p>○ <12 ></p> <p>· · (</p> <p>), , ,</p> <p>, , , ,</p> <p>, ,</p> <p>○ - : 1/2</p> <p>- :</p> <p>- :</p> <p>- :</p> <p>- :</p> | <p>○ :</p> <p>○ < 12 + 4 ></p> <p>(), , ,</p> <p>, , ,</p> <p>○ - :</p> <p>- :</p> <p>- :</p> <p>- :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</p> | <p>('13.6)</p> <p>(044-201-2419)</p> |
| 5. | ○ | <p>○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지>알림미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</p> | <p>/</p> <p>(044-201-2457)</p> |
| 6. | <p>○ :</p> | <p>○ :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</p> | <p>('13.1)</p> <p>(044-201-1535)</p> |

| | | | () |
|----|--|---|---|
| 7. | <p>○ : 19 65</p> <p>○ : 30 60</p> | <p>○ 19 ()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사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운영 요령</p> | <p>(‘13.1.)</p> <p>(‘13.1.)</p> <p>(044-201-1588)</p> <p>(044-201-2639)</p> |
| 8. | <p>○ : 60</p> <p>○ : 70</p> | <p>○ 64</p> <p>○ : 75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</p> | <p>(‘13.1.)</p> <p>(044-201-1737)</p> |
| 9. | <p>○</p> <p>○ , ,</p> <p>300㎡, . . 50㎡</p> | <p>○ , , (, , ,)</p> <p>○ , , ,</p> <p>15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사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</p> | <p>(‘13.2.)</p> <p>(044-201-2317)</p>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. | < > | ○
(3%, 2)
☞ (참고)농림수산물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
도자료>농가 시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| ('13.1.)
(044-201-2342) |
| 11. | ○ . | ○ . .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자>알림소식>보도자
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 | ('13.1.1.)
(044-201-2355) |
| 12. | ○
, | ○
☞() > >
> | ('13.5.)
(044-201-2355) |
| 13. | ○ . , . .
,
○ | ○
○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
훈령-예규-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
요령 | ('13.1.1.)
(044-201-2656) |
| 14. | ○ 50km
49 | ○ 30km
(49)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농림수산물사업시
행지침사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물불
제 사업 | .
('13.1.1.)
(044-201-2643) |

| | | | () |
|--------------|--|--|---|
| 15. | ○ | ○

○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| ·

(‘13.6.)

(044-201-2622) |
| 16. | ○

·

○ | ○

○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 | (‘13.4.)

(044-201-2632) |
| 17. | < > | ○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| (‘13.1.)

(044-201-2619) |
| 18. 5 ,
· | ○ 764km ²
○ B 133km ²
○ C 102km ² | ○ 776km ²
○ B 176km ²
○ C 138km ²
○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 | (‘13. 1.)

(044-201-2657) |

| | | | () |
|-----|---|--|--|
| 19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: 3% ○ : 20% ○ : 3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:10% ○ :10%() ○ :20%()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</p> | <div>('12.12.)</div> <div>(044-201-1858)</div> |
| 20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 -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p> | <div>('13.6.2)</div> <div>(044-201-1872)</div> |
| 21. | < 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()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</p> | <div>('13.4.)</div> <div>(044-201-1882)</div> |
| 22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 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 7 1 3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제품 육성자권리강화</p> | <div>('13.6.2.)</div> <div>(044-201-1654)</div> |

| | | | () |
|---------|-----|--|---|
| 23. | < 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</p> | ('13.1.)
(044-201-1717) |
| 24. FTA | < 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 <p>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</p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/p> | ('13.1)
(044-201-1719) |
| 지식경제부 | | | |
| 1. | 1 | ○ , 11 | ('12.12.)
(02-2110-5302) |
| | 2 | ○ | ('13.3.)
(02-2110-5302) |
| | | 2 | ☞ 법제처>법령통합검색(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' 입력)>시행예정법령 보기 |

| | | | | ()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2. | 1 | ○
· ,
LMO | ○

○
· | (13.12.) |
| | 2 | ○
· | ○

○
· | |
| | 3 | ○ | ○ | (02-2110-5661) |
| | 4 | ○ (36)
· , , | ○

· , ,

○

☞ (참고)국가법령정보센터>유전자변형생물체의
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| |

| | | | | ()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3. | | ○ 20% | ○ 25% | (‘12.11.27.) |
| | | | ☞ (참고)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 24201호, 2012.11.27, 일부개정] | (02-2110-5495) |
| 4. | | ○ | ○ | (‘12.8.24.) |
| | | | ☞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제품안전기본법 [시행2012.8.24], [법률 제11437호, 2012.5.23, 일부개정] | (02-509-7238) |
| 5. | | ○ | ○ | (‘12.11.6.) |
| | | | | (02-2195-1115) |
| 환경부 | | | | |
| 1. | | ○ 17
○ BOD, COD | ○ 20
○ BOD,
TOC(Total Organic Carbon) | (‘13.1.) |
| | | | | (02-2110-6822) |
| 2. 「 | | < > | ○ | (‘13.9.) |
| 」 | | | ☞ 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해경자료>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| (02-2110-6960) |

| | | | | () |
|----|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3. | | ○ , | ○ , , | ('13.2.) |
| | | |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| (02-2110-6859) |
| 4 | | ○ 2 | ○ | ('13.2.) |
| | | |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| (02-2110-6859) |
| 5. | | ○ | ○ , 2 Tier-3 | ('13.2.) |
| | | |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| (02-2110-6809) |
| 6. | 1 | ○ / | ○ / | ('13. 2) |
| | | | | (02-2110-6778) |
| | 2 | ○ (PM10) | ○ (PM10) | (('13.2.~) , |
| | | | ☞ (참고) 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 | (02-2110-6778) |
| | 3 | ○ , '06) (| ○) (| (('13.2.~) , |
| | | | | (032-560-7344) |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() | |
| 7. | ○ | ○ | ('13.1.)

(02-2110-6943) | |
| 보건복지부 | | | | |
| 1. | ① | ○ 50% | ○ 5% | ('13.1.)

(02-2023-7426) |
| | () | |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| |
| | ② | ○ 100% | ○ 5% | ('13.1.)

(02-2023-7426) |
| | (TS-1) | |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| |
| | ③ | ○ | ○ | ('13.10.)

(02-2023-8756) |
| | | |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| |
| | ④ | ○ | ○ | ('13.10.)

(02-2023-7413) |
| | | |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| |

| | | | | () |
|--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2. | 1 | Hib | ○ | ○
- :
- : 1 5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
('13.3)
(043-719-7369) |
| | 2 | 65 | ○ | ○ :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
('13.5)
(043-719-7369) |
| | 1 | | ○ 107 | ○ 144
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촉촉한 의료안전망 구축
[2]
('13)
(02-2023-8257) |
| | 2 | | ○ 72 /
(6) | ○ 5 /
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촉촉한 의료안전망 구축
('13)
(02-2023-8257) |
| 4. PC | | | ○ 1/2 | ○ PC
('13.6.)
(02-2023-7848) |

| | | | | (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5. | 1 | 100g | ○
○ | ○ 100
(13.1.1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 | | ○ | ○ 150
.
(02-2023-7785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. | 1 | ○ ' 12
- : 55.1
- : 88.1 | ○ ' 13
- : 58
- : 92.8 | (13.1.1)
(13.1.1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 | 2
○
-(18~64) 6
-(65) 15
○ : 5
○
-(18~64) 0
-(65) 2 | ○
-(18~64) 8
-(65) 17
○ : 7
○
-(18~64) 2
-(65) 4 | (02-2023-8672)
(02-2023-8654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. | 1 | ○ 1 | ○ 2
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 | (13.1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2 | <table><tr><td>【 (18) 】</td><td>【 (18) 】</td></tr><tr><td>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【 (6 ~ 18) 】</td><td></td><td></td><td>(13.1)
(02-2023-8204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 | 【 (18) 】 | 【 (18) 】 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60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690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20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 350,000원 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86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711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36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 361,000원 | 【 (6 ~ 18) 】 | | | | (13.1)
(02-2023-8204) 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|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20점~445점 | 520,000원 | 2등급 | 220점~319점 | 350,000원 | | |
| 【 (18) 】 | 【 (18) 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60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690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20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 350,000원 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86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711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36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 36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등급 | 380점~445점 | 86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등급 | 320점~379점 | 69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등급 | 260점~319점 | 52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등급 | 220점~259점 | 35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등급 | 380점~445점 | 886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등급 | 320점~379점 | 71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등급 | 260점~319점 | 536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등급 | 220점~259점 | 36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【 (6 ~ 18) 】 | | | | (13.1)
(02-2023-8204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><tr><th>활동지원
등급</th><th>인정
점수</th><th>기본
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| 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1등급 | 320점~445점 | 520,000원 | 2등급 | 220점~319점 | 35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활동지원
등급 | 인정
점수 | 기본
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등급 | 320점~445점 | 52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등급 | 220점~319점 | 35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(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7. | ○

,
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가
급여</th><th>구 분</th><th>추가
급여</th></tr><tr><td>최중증
1인가구</td><td>664,000</td><td>출산
가구</td><td>664,000</td></tr><tr><td>중증
1인가구</td><td>166,000</td><td>학교
생활</td><td>83,000</td></tr><tr><td>중증
장애인
가구</td><td>83,000</td><td>직장
생활</td><td>83,000</td></tr><tr><td>취약
가구</td><td>83,000</td><td>자립
준비</td><td>166,000</td></tr></table> | 구 분 | 추가
급여 | 구 분 | 추가
급여 | 최중증
1인가구 | 664,000 | 출산
가구 | 664,000 | 중증
1인가구 | 166,000 | 학교
생활 | 83,000 | 중증
장애인
가구 | 83,000 | 직장
생활 | 83,000 | 취약
가구 | 83,000 | 자립
준비 | 166,000 | ○

,

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추가급여</th></tr><tr><td>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/table> | 분 류 | 추가급여 |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| 684,000원 |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| 171,000원 |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| 684,000원 |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| 171,000원 |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| 684,000원 |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| 171,000원 |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| 171,000원 | (02-2023-8664) |
| 구 분 | 추가
급여 | 구 분 | 추가
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최중증
1인가구 | 664,000 | 출산
가구 | 664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증
1인가구 | 166,000 | 학교
생활 | 83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증
장애인
가구 | 83,000 | 직장
생활 | 83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약
가구 | 83,000 | 자립
준비 | 166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 류 | 추가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| 684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| 17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| 684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| 17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| 684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| 17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| 171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
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
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30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/table> | 분 류 | 금액
(원) 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8,300 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9,300 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| 9,300 | ○
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
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55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/table> | 분 류 | 금액
(원) 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8,550 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10,260 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| 10,26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 류 | 금액
(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8,3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9,3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| 9,3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 류 | 금액
(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8,55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10,26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| 10,26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○
- : 1 4,000
- : . | ○
- : 1 6,000
- : 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8. | - | ○
※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
참조 | ('13.1.27.)
(02-2023-8184) |
| 9. | ○ 100%
(31)
- '12 : 48,111 | ○ 150% (40)
- '13 : 57,811 | -
(02-2023-8667) |
| 10. | - | ○
- () ,
, , ,
, . ,
('13.4.11.)
○
- () 30
○
- () , | ('13.4.11.)
(02-2023-8640) |
| 11. | ○ 1 ~3 : 180
(300)
○ 4 : 100 | ○ 1 ~4 : 180 (300)
(300) | ('13.1)
(02-2023-8483) |

| | | | () |
|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|
| 12. 3~5 全 | ○ 5 | ○ '13 3 3-5 | ('13.3) |
| | | 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
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 | (02-2023-8926) |
| 13. | ○ 1,495,550
(4) | ○ 3.4%
1,546,399 (4) | ('13.1) |
| | ○ 4.17% | ○ 1.04% | |
| | ○ 133
108.5
101.5 | ○ 228
136
116 | |
| | ○ 3
※ 100인 미만, 100인 이상~
300인 미만, 300인 이상 | ○ 30
9.5% (5.3%) | (02-2023-8128) |
| | ○ (,
) | ○ | |
| | ○ 30% | ○ 30% | |
| | ○ 1 50 | ○ 1 75 | |

| | | | |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| | () | |
| 국토해양부 | | | | |
| 1. | 1 | ○ . | ○
- , ,
○
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
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| (13.1.1.)

(044-201-3424) |
| | 2 | ○ . | ○ (, ,)
(, ,)
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
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| (13.)
*

(044-201-3424) |
| | 3 | ○

(100%) | ○
· (30%)
(70%)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
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제 도입 | (13.1.1.)

(044-201-3424) |

| | | | () |
|----|---|--|--|
| 2. | | ○ () , () ,
, , ,
,
○ 2012 3 4
(, , ,) | .
('13.8) |
| | | | ○
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|
| 3. | | ○ (PPLIS)
,
,
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 정보시스템)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| ('13.9) |
| | | | ('12.12.21)
(044-201-4651) |
| 4. | ① | ○ .
: 4.0%
○
: 4.2%
○ .
: 5.2% | ○ . : 3.7%
○ : 3.8%
○ . : 4.3%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|
| | | | ('12.12.21)
(044-201-3338) |
| | ② | ○ 1
: 2.5%
○ 1 2
: 3.5%
○ 2
: 4.5% | ○ 1 : 2.0%
○ 1 2 : 3.0%
○ 2 : 4.0%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|
| | | | 「
」
('12.12.21)
(044-201-3338) |

| | | | () |
|----|---|--|--|
| 5. | <p>○ .</p> <p>: 3</p> <p>(3 5)</p> <p>○</p> <p>: 5</p> <p>○ .</p> <p>: 3</p> <p>(4)</p> | <p>○ .</p> <p>: ()</p> <p>4</p> <p>(4 5)</p> <p>○</p> <p>: ()</p> <p>5 5</p> <p>○ .</p> <p>: ()</p> <p>4</p> <p>(5)</p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 | <p>(13.1.)</p> <p>(044-201-3338)</p> |
| 6. | <p>○ .</p> <p>- 60m² +</p> <p>5 +</p> <p>10</p> | <p>○ .</p> <p>- 60m² +</p> <p>7</p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| <p>「 (2013.1)</p> <p>(044-201-3338)</p> |
| 7. | ○ | <p>○</p> <p>· , ,</p> <p>· ,</p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| <p>「 (2013.1)</p> <p>(044-201-3338)</p> |
| 8. | ○ | <p>○</p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| <p>「 (2013.1)</p> <p>(044-201-3338)</p>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9. | < > | ○ | ('13.1) |
| | |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| (044-201-3369) |
| 10. | ○ 500 | ○ 500 | ('13.1) |
| | ○ 4 | ○ 2) | (044-201-3369) |
| | |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인 자유 크게 확대 | |
| 11. | ○ | ○ | ('13.7) |
| | | ☞() > | (044-201-3367) |
| 12. | ○ | ○ | ('13.7) |
| | |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| (044-201-3367) |
| 13. | ○ 2006.9.25 (2009.7.1) | ○ 2014.12.31 | ('12.12.18) |
| | |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| (044-201-3392, 3386) |

| 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4. | ·
PDF | ○ (CAD) | ○ PDF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
도자료>등산로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지
도” 만든다. | (’13. 6)

(031-210 -2720) |
| 15. | ①

·

· | ○ 30

○ 10 30

○ | ○

○ 20

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.
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전부개정 | (’13.1 , 4)

(044-201-3581) |
| | ② PQ

(2 →4) | ○

○ (2) | ○ ,

○ (2~4)
- 20 2 , 20 ~30
3 , 30 4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
준 전부개정 | (’13.4)

(044-201-3501) |

| | | | | () |
|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|
| 16. | 1 | ○ | 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| (13.1) |
| | 2 | ○ | ○ 70%

- 20~50%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| (044-201-3581) |
| 17. | 1 | ○ | 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| (13.1) |
| | 2 | ○ | 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| (044-201-3577) |
| | 3 | ○ | ○

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
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| |

| | | | () |
|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8. | | < >
○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
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
립 허용 | ('13)
(044-201-3689) |
| 19. | | ○
20
20 5 | ('13.1.1.)
(044-201-3691) |
| 20. | | ○
25
P
12.5 | ('13.1.1)
(044-201-3691) |
| 21. | | < >
○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
특별법 | ('13.9.11)
(044-201-3691) |
| 22. | 1 | < >
○ , , | ('13.1) |
| | 2 | < >
○ .
, , | (044-201-3751)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3. | ○ $\frac{2}{3}$, $\frac{1}{2}$ | ○ : ① $\frac{2}{3}$, $\frac{1}{2}$, ② $\frac{4}{5}$ | ('13.7)
(044-201-3751) |
| 24. | ○ | ○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 | ('12.12.18.)
(044-201-3843) |
| 25. | ○ | ○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상 | ('13.9.)
(044-201-3844) |
| 26. | < > | ○ 2013 3.5 , ,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| ('13.1)
(044-201-3851) |
| 27. | ○ 4.5
○ 3.5 , | ○ 4.5 →
○ 3.5 ,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| ('13.8)
(044-201-3851)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8. | < > | ○ 2013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| ('13.1)

(044-201-3851) |
| 29. | ○ | ○
-

50%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자료>철도
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| ('13.1.1)

(044-201-4602) |
| 30. | ○ 5
- | ○ 20 (1)
-

☞ () > >
> | ('13.6)

(044-201-4177) |
| 31. | 1 . | ○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항만법 | ('13.6) |
| | 2 | ○

.

- 20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항만법 | 20

(044-201-4145) |
| | 3 | ○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항만법 | |

| | | | | ()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2. | 1 | ○ 1 | ○ 200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정책기본법 | ('12.12)

(044-201-4003) |
| | 2 | ○ 30 | ○ 60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정책기본법 | |
| | 3 | ·
,
,
, | ○ 30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정책기본법 | |
| | 4 | ○ 6 | ○ 1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정책기본법 | |
| | 5 | ○ 15 | ○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정책기본법 | |

| | | | () |
|-----|---|--|--|
| 33.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 ○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| ('13.6)

(044-201-4007) |
| 34.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p>()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| ('13.7)

(044-201-4007) |
| 35.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p>(1
3)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| ('13.7)

(044-201-4007) |
| 36. | -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2012 <p>('13.1)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| ('13.1)

(044-201-4011) |

| | | | ()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|---|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7. | , | < > | ο ,
('13.1)
(044-201-4018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8. | ο 20
, 10
· ,
65
(39)
ο 500
() | ο · ,
·
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
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
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
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
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 | 4
('13.1.1.)
(044-201-4022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9. | <table><tr><td>A급</td><td>B급</td><td>C급</td><td>D급
(또는
육상헬기장)</td></tr><tr><td>90M
이상</td><td>90M
미만
40M
이상</td><td>40M
미만
15M
이상</td><td>항공기 기
체 길이
의 1.2배
로서 최
소 15M
이상</td></tr><tr><td>30M
이상</td><td>20M
이상</td><td>15M
이상</td><td>항공기 기
체폭의 1.2
배</td></tr></table> | A급 | B급 | C급 | D급
(또는
육상헬기장) | 90M
이상 | 90M
미만
40M
이상 | 40M
미만
15M
이상 | 항공기 기
체 길이
의 1.2배
로서 최
소 15M
이상 | 30M
이상 | 20M
이상 | 15M
이상 | 항공기 기
체폭의 1.2
배 | ο 15m 1.2
() > >
> | ('13.1)
(044-201-4349) |
| A급 | B급 | C급 | D급
(또는
육상헬기장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0M
이상 | 90M
미만
40M
이상 | 40M
미만
15M
이상 | 항공기 기
체 길이
의 1.2배
로서 최
소 15M
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0M
이상 | 20M
이상 | 15M
이상 | 항공기 기
체폭의 1.2
배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 | ()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0. | | ○ .
(Shoulder) | ○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
정보>항공법 시행규칙 | (13.1)
(044-201-4349) |
| 41. | 1 | ○ | ○
15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
정보>자연재해대책법 | (13.1)
(044-201-4350) |
| | 2 | ○ | ○
15
,
,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
정보>자연재해대책법 | |
| 42. | | ○ | ○ 「
」, 「
」
.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
정보>항공법 시행규칙 | (13.2)
(044-201-4355) |
| 43. | | - | ○
(
3 100%,
2 50%)
○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
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| (13.3)
(044-201-4377) |

| | | | () |
|-----|--|--|--|
| 44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'10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: 3.8mg/L- : 0.074mg/L○ ('10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: 7,761.7kg/- : 203.11kg/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: (3.3mg/L), (0.065mg/L)○ ('17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: 7,241.3kg/- (193.00kg/)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회
호 총량관리 시행</p> | <div>'13.7)</div> <div>(044-201-4422)</div> |
| 45. | <div>(6)</div> <div>< > 1</div> <div>< > 1 1</div> <div>< ></div> <div>1</div> <div>「 5</div> <div>-</div> <div>-</div> <div>(好氣性)· (嫌氣性)</div> <div>(「 4 2 10</div> <div>)</div> | <div>< ></div> <div>< ></div> <div>< ></div> | <div>[6]</div> <div>('13.1)</div> <div>(044-201-4427)</div> |

| 여성가족부 | | | |
|-------|-------|--|---|
| | | | () |
| 1. | < > | <p>○ . , , , “ ” (’ 12.12.17)</p> <p>☞ (참고)국립중앙청소년다임센터 홈페이지</p> | <p>(’12.8)
(’12.12.17)</p> <p>(02-2075-8613, 8617)</p> |
| 2. | < > | <p>○ .</p> <p>○ 100</p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청소년기본법’</p> | <p>(’13.1.1.)</p> <p>(02-2075-8614)</p> |
| 3. | ○ 5 | ○ 7 | <p>(’13.1.1)</p> <p>(02-2075-8713)</p> |
| 4. | ○ , , | ○ , , |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</p> <p>(’13.6.19)</p> <p>(02-2075-8766)</p> |
| 5. | ○ 19 | ○ , : (’12.10.25.) | <p>((/ ’13.6.19)</p> <p>(02-2075-8768)</p> |
| | ○ < > | <p>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소식>보도해당>보도자료> ‘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’</p> <p>○ , : ’ 13.6</p> <p>○ : ’ 13. 6</p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</p> | |

☞ (참고)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

| 고용노동부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| () |
| 1. | ○ 2 (,) | ○ 17 (① . , ② , ③ , ④LED , ⑤ , ⑥ , ⑦ , ⑧IT , ⑨ , ⑩ . , ⑪ () . , ⑫ , ⑬ . ⑭ ⑮ ⑯MICE (U) | <div>('13.1)</div> <div>(02-6902-8474)</div> |
| 2. | ○ 6 2
○ | ○ 3 4
○ | <div>('13.1)</div> <div>(02-6902-8474)</div> |
| 3. () | ○ 1 90%,
2 80%, 3 70% | ○ 1 90%, 2 70%, 3 50% | <div>()</div> <div>('13. 1)</div> <div>(02-2110-7172)</div> |
| 4. | ○ 4 | ○ 5 (,)

☞ (참고) www.work.go.kr/intern/ | <div>2013</div> <div>('13.1)</div> <div>(02-2110-7178)</div> |

| | | | ()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| ○ 15% | ○ 100
15%
○ 100 300
10% + 5
○ 300
5% + 20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용
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
래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배전다 | ,
('12.12)

(02-2110-7306) |
| 6. | ○ '12 : 590,000 | ○ '13 : 626,000

☞ (참고)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
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 | ,
('13.1)

(02-2110-7313) |
| 7. | ○ 1/2 | ○ 3/4

○ 1/2
3/4
+ 1/4

☞ (참고)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
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 | ,
('13.1)

(02-2110-7313) |
| | ○ 1/2
+ 1/2 | ○ 1/2
+ 1/2 | (02-2110-7313) |
| 8. | ○ (200) | ○ (100)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
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인
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
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| ('13.1)

(02-2110-7313) |

| | | | ()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9. | - | ○ 1~2 | ('13.1)
(02-2110-7307) |
| 10. | - | ○ () | ('13.1)
(02-2110-7310) |
| 11. | - | ○ ‘ , ,
(), ,
*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
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
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
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학
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
받는다 | ('13.1)
(02-2110-7307) |
| 12. | ○ 50%
○ 50% | ○ 15
30
○ 30% | ('13.1)
(02-2110-7305) |
| 13. | ○ 4,580 | ○ 4,860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
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액 시
간급 4,860원으로 결정 | ('13.1.1)
(02-2110-7399) |
| 14. 4 | ○ 50 100 | ○ 100 100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
렛브로셔 | ('13.1.1)
(02-2110-7420) |

| | | | (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5. | ○ '10~'12 | ○
○
- ()
(100) (30)
)
- , ,
.
- ()
)
()

☞ (참고) 「위험성평가 자원 시스템(http://kras.kosha.or.kr)」 ('13.1.1. 오픈 예정) | ('13.1.1.)

(02-6922-0913,0914) |
| 16. | ○ , , , ,
, , , ,
, , , , | ○ , , , , , , , ,
, , , , ()

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| 28
('13.3)

(02-6922-0935) |
| 17. | ○ , , , | ○ , , , , , , , ,
, , , , , , , ,
, , , , , , , ,

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| 28 5
('13.3)

(02-6922-0935) |
| 18. | ○ 2013 | ○

- : 10
- : 1
○ : 2013 1 | ('13.1)

(02-6922-0951) |

| | | | (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9. | ○ 2013 | ○

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 | ('13.1)

(02-6922-0953) |
| 20. | ○

18

○

60 | ○

19

○

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개정 법률 | ('12.12.18)

(02-2110-7219) |
| 21. | ○ | ○ 2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| ('12.11.18)

(02-2110-7223) |
| 방송통신위원회 | | | |
| 1. | TV | ○ TV

TV
※ 아날로그방송종료 : '12.12.31.

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” | ('13.1.1)

(02-750-2337) |

| | | | () |
|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| | ○ (1599-0042)
○ 107 『107 』
☞ (참고)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
(http://www.relaycall.or.kr) | ('13.1)
(02-750-2542) |
| 3. 700MHz | | ○ ()
740~752MHz
2012 12 31 | ('13.1)
(02-750-2271) |
| 4. | 1 | ○ :
/ / /
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
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
시” | 47 2
('13.1) |
| | 2 | ○ :
(20 cm)
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
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
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 | (02-750-2244) |
| | 3 | ○ :
○ : → ,
☞ (참고)국립전자파연구원 홈페이지>자료실>법
령자료실>무선기가> “전자파흡수율 측정기
준 고시” | |

| | | | () |
|-------|---|--|--|
| 5. | o | o | <p>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,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</p> <p>(13.2)</p> <p>(02-750-2753)</p> |
| 국가보훈처 | | | |
| 1.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: 2012 4% o : 2012 5~15% o . : 2012 2 | <p>(13.1.1.)</p> <p>(02-2020-5179)</p> |
| ※ | | <p>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</p> | |
| 금융위원회 | | | |
| 1. | ① | <p>o ()</p> <p>o :</p> <p>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중합개신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</p> | <p>(13.1)</p> <p>(02-2156-9831)</p> |
| | ② | <p>o 10%</p> <p>o 10% 20%</p> <p>☞ (참고) 상 동</p> | |
| | ③ | <p>o 3</p> <p>o</p> <p>☞ (참고) 상 동</p> | |
| | ④ | <p>o (:100)</p> <p>*</p> <p>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</p> <p>☞ (참고) 상 동</p> | <p>o () 15</p> <p>,</p> |

| | | | | ()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| 1 | ○ 18 | ○ (1~6)

☞ (참고)금융위원회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| ('12.10.15)

(02-2156-9856) |
| | 2 | ○ | ○ (-)

☞ (참고)상등 | |
| 3. 「
」 | | ○ | ○ 5% | ('13.6.12)

(02-2156-9475) |
| | | ○ (CP) | ○ (CP) *

* 실물발행 위험, 유통의 불편함, 투자자 보호 미흡
※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제도는 병행 유지

☞ (참고)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시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| ('13.1.15)

(02-2156-9874) |
| 관세청 | | | | |
| | | | | () |
| 1. | | ○ 3 | ○ 3 | ('13)

(042-481-7906) |

| 병무청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| () |
| 1. | ○
(
43 13) | ○ (384)
- : 2012.12.21.
-
- , | ('12.12.21.)
(042-481-2918) |
| 2. | ○ | ○
19 | ('12.12.20)
(042-481-2946) |
| 3. | ○
. | ○
.
☞ (참고)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소식>공지/
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 | ('13)
(042-481-2738)
(032-835-2736) |
| 4. | ○
(,) | ○ , | ('13.1.1.)
(042-481-2716) |
| 5. | ○
200 : | ○ 100 | ('12.12.20.)
(042-481-2771) |

| | | | (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. | ○
- 2 10 | ○
- 15 | ('12.12.20.)
(042-481-2771) |
| 7. ‘ ’ | ○ ‘ ’
28
1 | ○ ‘ ’
29
1 | ('12.12.20)
(042-481-2965) |
| | ○ 29 6 | ○ 30 6 | |
| 8. | < > | ○ 25 1
,
3 | ('12.12.20)
(042-481-2965) |
| 9. 「 」 | ○ : 3 | ○ : 2
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
병역명문가 선양사업 | ('13.2)
(042-481-2992~3) |
| 10. | ○ 3 | ○
6 · 25
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
병역명문가 선양사업 | ('13)
(042-481-2992~3) |

| | | | () |
|-------|---|--|---|
| 11. | ○
- 2
,
1
※ 동점자, 공동수상자, 입
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
는 공동수상자에 대한
추천기준이 불명확 | ○
-
2
-
1 | ('13.1 ,)
(042-481-3005) |
| 12. | < > | ○ | (
('13.1.1.)
(042-481-3007) |
| 방위사업청 | | | |
| 1. | ○ | ○「 」, 「 」 | ('13. 2)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
령>행정규칙
(02-2079-6445) |
| 2. | < > | ○「 」
(1%p)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
령>행정규칙 | ('13. 1월)
(02-2079-6445) |

| | | | ()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. | < > | ○ 20% 5
(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 | , ('13.2)
(02-2079-6445) |
| 4. | ○ 2
○ | ○ (50%)
○ 「 」 5
(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 | , ('13. 2)
(02-2079-6445) |
| 5. | ○
○ (: 100%) | ○ (0.5%p)
○ (10%)
(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 | , ('13.1월)
(02-2079-6445) |
| 6. | ○ 「 2 」
2 50% | ○ 「 2 」 2
10 2
3
전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
(참고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 | ('13.2)
(02-2079-6454) |

| | | | | () |
|-----------|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. 「
」 | 1 | · o | o (·)
-
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
법령 | ('13.3.19)

(02-2079-6707) |
| | 2 | o | o ('09.7.31)
·
·
·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
법령 | |
| | 3 | o | o 4 5
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
법령 | |
| | 4 | o | o

※ 수수료율 : 판매가의 1/10,000
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
법령 | |

| | | | | () |
|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|
| 8. | | | | |

| 소방방재청 | | | | |
|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() |
| 1. | 1 | - | ○
- : 2013. 2.23
- : 2013. 2.23 ~ 8.22
※ 150㎡ 미만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. 2.23부터 | (13.2) |
| | 2 | - | ○ ()
- 1 1
※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
- 2
- 1
- 1 | (02-2100-5338) |
| 2. | 1 | ○
: 21 30
○
: 21 30
○
: 20 30
○
: 20 35 | ○ : 21
40
○ : 21
40
○ : 20 40
○
: 20
○
: 20
40 | (13.1.1)
(02-2100-5316) |
| | 2 | ○ (5) : ,
, , , ,
과목 변경 | ○ (3) : , , ,
○ (2) : , , , ,
, , , , | |

| 산림청 | | | |
|-----|---|-------|--|
| | | | () |
| 1. | | < > | ○
('13.5.24)

(042-481-4204, 8875) |
| 2. | 2 | < > | ○

- ,

('13.)

(042-481-4216) |
| | 3 | < > | ○

- (170),
(210),
(130)
('12.7.26)

(042-481-4216) |
| 3. | | ○ 3km | ○ 2km

☞ 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
('12.12)

(042-481-4076) |

| | | | | ()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4. | | ○ | ○ | |
| | | | , | (13.1.1) |
| | | ○ | ○ | (042-481-4201) |
| | | | , | |
| 중소기업청 | | | | |
| 1. | 1 | ○ () | ○ () | (13.1) |
| | | ○ | ○ | |
| | | ○ | | |
| | | ○ | | |
| | 2 | ○ . | ○ . | |
| | 3 | < > | ○ R&D | (042-481-4453) |
| | 4 | ○ 1 | ○ (1 ~9) | |
| 2. | | < > | ○ : , , | 2013 |
| | | | ○ : , , , | (13. 1) |
| | | | ○ : 10 () | |
| | | | ○ : (: 1) (80%, 20%) | (042-481-4491) |
| | | | ○ : → . | |
| | | | → → → → | |
| | | | → | |

| 특허청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() |
| 1. | ○ | ○
3 30% | (13.1.1.)
(042-481-5195) |
| 2. | ○
(ATM)
○ (ATM)
: | ○
○ (ATM) | -
(042-481-5195) |
| 3. | ○ | ○
○ | (13.1)
(042-481-8238) |
| 식품의약품안전청 | | | |
| 1. | ○
- :
(),
(),
() | ○
- : | (13.1)
(043-719-2257) |